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조 성 권

韓國 麻藥犯罪와 國家 麻藥政策에 대한 研究

-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1945-1975
- A Fous on Park Regime -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犯罪學科

國際麻藥犯罪學專攻

李 晟 在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조 성 권

韓國 麻藥犯罪와 國家 麻藥政策에 대한 研究
-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1945-1975
- A Fous on Park Regime -

위 論文을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國際麻藥犯罪學科
國際麻藥犯罪學專攻
李 晟 在

李晟在의 國際麻藥犯罪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査 委員長 朴 亨元 印

審査 委員 조 성근 印

審査 委員 김 지희 印

目次

第 1 章 序論	1
第 1 節 研究目的	1
第 2 節 研究範圍와 方法	3
1. 研究範圍	3
2. 研究方法	7
第 3 節 麻藥 및 麻藥犯罪의 개념적 정의	8
第 2 章 韓國 麻藥犯罪의 歷史的 變化	9
第 1 節 麻藥犯罪의 一般的 변화추세	9
1. 麻藥(아편)의 時代別 變化	9
2. 大麻의 時代別 變化	13
3. 향정신성의약품	15
4. 유해화학물질 과 시대별 신종마약의 변화	18
第 2 節 組織的 次元의 麻藥犯罪의 變化	19
1. 마약밀수와 범죄조직의 變化	20
2. 主要事件	30
第 3 章 麻藥政策의 一般論	39
第 1 節 범죄화	39
第 2 節 비범죄화(합법화)	40
第 4 章 韓國의 國家 麻藥政策	42
第 1 節 麻藥관련 法律政策의 變化	44
1. 麻藥法	45
2. 大麻管理法	48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9
4. 기타	51
第 2 節 麻藥관련 國家機關의 變化	52
1. 保社部	52
2. 檢察	53
3. 關稅廳	54
4. 警察	54
5. 法務部 등	55
第 3 節 治療再活政策의 變化	57
1. 時代的 狀況과 治療再活 政策의 變化	57
2. 治療再活 法律의 變化(保護觀察法을 中心으로)	58
3. 處遇改善의 變化(교정기관을 中心으로)	65
4. 治療機關의 變化(병원 및 치료시설을 中心으로)	74
第 5 章 國家麻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78
第 1 節 麻藥관련 法律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78
第 2 節 麻藥관련 國家機關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80
1. 搜查機關의 기법 開發과 電算管理運營	81
2. 各 機關別 國際的 協力強化	81
第 3 節 治療 再活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83
1. 啓蒙과 弘報	85
2. 治療保護機關의 擴充 및 専門인력의 양성	85
참고문헌	86
ABSTRACT	93

표목차

<표 2-1> 근대 마약사범 검거현황 (아편에관한죄)	11
<표 2-2> 근대 도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12
<표 2-3> 근대 계절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12
<표 2-4> 1960-1980년도까지 마약사범 검거현황	13
<표 2-5> 1970년 이후 대마사범 현황	14
<표 2-6> 1970년대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검거현황	16
<표 2-7>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변화추이	17
<표 2-8> 향·정 및 아편밀조자 연혁	23
<표 2-9> 일본조직과 밀조사범과의 유착관계	28
<표 2-10> 압수량으로 본 히로뽕 공급루트	36
<표 2-11> 1988년 부산지검 검거 職業군 통계	37
<표 4-1> 우리나라의 藥物남용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	66
<표 4-2>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	67
<표 4-3> 서울보호관찰소 형법상 약물사범에 대한 제재조치	73
<표 4-4>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 현황	74
<표 4-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병상 수	76
<표 4-6>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관할기관 현황	77

그림목차

[그림 2-1] 밀수경로	26
[그림 2-2] 히로뽕 폭리의 유통구조	29
[그림 4-1] 보호관찰 기구표	71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目的

마약으로 인한 피해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개인적 삶을 파괴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약물이다. 또한 지하경제 중에서 무기밀매 다음으로 높은 추정치로 세계 마약시장을 전문가들은 연간 5천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각 나라에 미치는 마약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따라서 세계는 자국의 마약근절을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마약류의 확산실태를 보면 1999년에 이미 마약지수가 마약류 확산의 비등점인 20을 넘어서 23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는 1993년 이후 사용계층 및 마약류의 다양화와 특히 신종 마약의 급속한 확산과 국제적 교류 및 세계여행 등의 확대로 마약류 공급선과 유입경로의 多樣化, 大型化, 組織化 그리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의 증가 등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가 처음 유입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의 阿片戰爭(1840-1841)이 끝나고 그 이듬해에 중국을 다녀온 사신들의 보고서에 아편해독과 아편이 조선 전역에 만연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50년 전에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이다.

구한말 강화도조약으로 원산항이 개항(1880)되면서 최초로 입항한 중국 증기선의 선장이었던 “양대인”이란 사람이 아편을 흡연하는 것을 보고 조선 사람들이 따라 하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¹⁾ 일본 식민지 시절 朝鮮總督府가 아편을 단속하는 포고령을 발표(1912-1914)하고 아편단속업무에 주력하였던 사실은 今世紀 초반에 벌써 아편중독이 일정지역이나 일부 계층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해방 후 1980년 초까지 마약류는 급속도로 국내에 유입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이 현대국가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자 약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마약 유입과정과 그 실태 및 각 시대별, 정권별로 그 정책과 問題點들을 살펴봄으로서 지난 과거를 통하여 앞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마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하는지를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당시 사회적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고 아울러 마약류 정책과 관련기관 및 법률적 대응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선진국인 미국은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면서 開發途上國과 後進國들로부터 유입되는 마약을 차단하고 미국 국민 중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재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이고 치밀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유럽 國家들이 마약단속의 한계를 느끼며 비범죄化를 병행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은 우리나라의

1) 임대환(2001), 『마약밀수 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p. 5.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남용은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世界化 정책과 대규모의 國際的 행사 및 體育行事を 치르면서 마약의 확산도 비례하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 사용자들도 예전에는 일부계층만의 전유물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지금은 청소년은 물론 주부들을 포함한 극히 평범한 시민들과 해외 유학생들의 신종마약류를 유입, 중국 교포들의 보따리 밀매, 러시아 유희들과 같이 유입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 마피아 및 일본과 중국의 범죄조직인 야쿠자와 삼합회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의 외화벌이 마약류 생산 등 우리나라와 주변국가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살펴볼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그 확산 속도와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보다 合理的이고 效率的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 논문은 근대 우리나라의 마약유입의 경로와 당시의 실태를 살펴보고, 歷史的 흐름 속에 변화하여 온 마약정책과 법률 제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時代別 그 의의와 問題點을 파악하여 밀려드는 마약류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效率的으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第 2 節 研究範圍와 方法

1. 研究範圍

해방이전의 마약실태, 일본 식민지 및 광복이전의 마약실태, 1960년대와

1970년대(박정희 정권중심으로) 후반으로 나누어 연대별로 마약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相對적으로 각종 통계자료와 연구가 도외시되어져 미진하였던 1970년대 후반까지를 중점적으로 研究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기록 속에서 마약류를 언급하기 이전부터 서민들은 이미 양귀비 등을 가정용 비상약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이미 동인도회사에서 인도의 아편에 대한 專賣權을 잡고 중국으로의 밀수를 하여 반출하면서 서양국가들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중국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阿片戰爭(1840-1842)을 치르고 치욕적인 ‘난징조약’(1842)을 체결하고 마무리되었지만 그 피해는 엄청났다.²⁾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마약류 역사를 중심으로 유입 당시 政治的 상황과 마약류를 연관지어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마약류의 법률 제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관련법률이 제정되었던 일본 식민통치시절과 1960년대와 마약범죄조직의 활동으로 국내에서 마약류를 생산하였던 1970년 초반 이후를 구분하고 그 후로는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1970년대 후반)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法の 제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 제정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의한다는 “罪刑法定主義”에 따른 입법대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³⁾ 근대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련 법 제정의 시작은 1953년에 제정된 아편류를 규제대상으로 한 것을 효

2) 전경수(1992), 『마약범죄수사론』, 도서출판, p. 26.

3) 죄형법정주의란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형법의 기본 보장적 이념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로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시로 한다. 이후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메사돈, 앵속 등의 마약류가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면서 사회에 문제가 되자 1957년 아편을 포함한 당시 모든 마약류를 구분하기 위하여 「마약류법」이라는 특별 형법을 제정하였다.

1960년대는 「마약류법」을 조금씩 개정하여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연예인을 중심으로 사회 상류층에서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하여 청소년과 젊은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76년에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대마관리법」으로 젊은층과 일부 청소년들이 당시 약물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LSD, 메스암페타민(히로뽕)등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등을 복용하여 社會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해 1977년에 NU의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는 청소년들 중 相對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본드, 부탄가스 등을 구입 이를 흡입하면서 다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또 시대적 변화에 따라 법률이 개정 및 통합되게 되는데 그 시대적 배경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2) 마약 정책의 일반적 變化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강력한 불법화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다.⁴⁾ 특히 마약류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1980년대까지 정부는 관련 부처를 이용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1980년 후기에

4)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할 것. 조성권(2002),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학술회 발표논문.

들어 와서는 마약 제조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도 하였는데 각 時代別 정부와
관련기관들의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그 시대의 문제점 등을 고찰한다.

3) 治療再活의 變化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재활
의 정책은 극히 미진하였는데 마약류 범죄와 중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치료재활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각 시대별 마약관련 치료재활의 관련 제도와 법규 및 현황
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의 치료재활 정책은 그 동안 형사처벌(엄벌주의) 기존의 관행으
로 인해 가지고 있는 제도를 效率的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 問題點이 있
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法 테두리 밖에서의 약물 환자들이 접근 할 수 있는
치료부분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治療 및 再活을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변천과 改善方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4) 麻藥관련 國家機關의 변천

마약류의 단속과 중독자들의 치료재활을 선도하였던 각 시대별 마약관련
國家機關들의 활동 및 기관별 영역들을 알아보고 아울러 社會團體 및 국가기
관의 國際的 기구 등에 대한 변화와 활동 및 당시의 問題點을 분석한다.

2. 研究方法

본 연구는 해방이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마약관련, 정책과 법률제정 및 치료재활 등 마약전반에 걸친 歴史的 變化와 의의를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지난 마약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다가올 21C 마약류의 흐름을 예측하고 그 통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로 진행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내용분석으로 주로 기존에 발표된 각종자료 및 문헌을 인용하였으나 해방이전과 1960년대 통계자료와 문헌들의 빈약성으로 인하여 각종 기관의 報告書 및 신문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사례분석으로 기존 마약수사관들이 가지고 있는 個人的 자료들도 참고하여 사실적인 사건 사고들을 사례 연구함에 따라 대외비 문건인 경우 각 주처리가 적절치 않은 부분은 생략하였음을 밝혀둔다.

셋째, 역사적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통제정책이나 치료재활부분 등 일방적인 내용이나 나열식 연구이었다면 본 연구는 역사를 토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른 마약범죄와 마약정의 변화과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제2장은 마약범죄의 역사적 변화를 時代的 변천에 따라 마약과 그 조직의 변화를 사건사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제2절의 범죄조직과 밀수계보는 기존 경찰청 搜查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제3장은 일반적인 마약정책을 시대상에 따라 고찰하였다. 제4장은 마약정책의 변화를 법률제정과 개정 및 주요판례들과 마약관련 국가기관 그리고 치료재활부분의 법률과 정책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時代別 정책들에 대한 問題點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앞으로 국가 마약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한다.

第 3 節 麻藥 및 麻藥犯罪의 概念的 정의

우리 사회에는 一般的으로 依存性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마약 또는 마약류라고 지칭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엄격하게 科學的인 관점에서 보면 마약은 “음식 이외의 물질로서 그 化學的 성질에 의하여 생물의 인체에 構造的 또는 기능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것이 몸에 흡수될 때 기관 어느 부분의 구조 또는 작용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약물을 정의하는 약리학자들의 입장과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藥理的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을 형성시키고 남용되는 물질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⁵⁾을 총괄하는 의미”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에 대하여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이를 중단할 경우 身體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禁斷症狀),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⁶⁾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과 신종마약도 본 논문에서는 같은 마약과 마약범죄로 분류한다.

5) 서울지방경찰청(1999), 『마약류 수사연구(마약의 정의)』, pp. 5-8.

6) 대검찰청(1998), 『마약류 범죄백서』, p. 3.

第 2 章 韓國 麻藥犯罪의 歷史的 變化

第 1 節 麻藥犯罪의 一般的 變化 추세

1. 麻藥(아편)의 時代別 變化

1) 이조시대

해방이전에는 마약의 일종인 아편(양귀비)은 마취약 또는 수면약으로 효능이 있어 오랜 옛날부터 알려져 있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1500년대에 사용한 기록이 있다. 12세기까지 상품으로서의 아편은 소아시아만의 산물이었다. 그 후 페르시아, 인도, 중국에 퍼져 중국에는 13세기경 전해져 17세기에는 흡연의 풍속이 시작되었다가 1729년에 「흡연금지령」이 내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록상으로는 1611년(광해군3년)으로 아편의 약효를 소개하고 있는데 당시 아편이 남용되고 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⁷⁾ 중국과 영국간의 阿片戰爭(1839-1842)이 끝난 다음 해에 중국을 다녀온 우리나라 사신들이 기록한 보고서인 “견문별단”에 아편흡입의 해독을 논하고 조선에 아편의 확산을 우려하는 내용이 있다.⁸⁾ 그러나 이조시대를 통틀어 마약을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았고 다만 藥用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7) 전경수(1992), 「마약범죄수사론」, p. 26.

8) 임대환(2001), 「마약밀수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p. 5.

2) 일제시대 및 1960년대

아편재배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는 구한말로 추정된다. 원산만 개항 당시 최초로 입항한 것이 중국의 증기선이었고 중국인 ‘양대인’이란 자가 아편을 흡입하면서 그 자랑스러움을 한국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부터 “당료”이라 하였고 그 후로 앵속, 양귀비라고 명명하였다.⁹⁾ 구한말에 아편재배가 퍼지자 1905년 大韓帝國에서는 아편의 흡입, 흡입기구의 수입, 양귀비재배 등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아편사용을 단속한 바 있다.

모르핀은 1890년대에 호남지방에서 처음 유입되었고, 이후 의사와 선교사에 의해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다가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1910년대 초 「아편단속법령」을 발표하여 주요 위생업무의 하나로 아편을 단속하면서도 朝鮮總督府에서는 한국에서의 마약단속을 원조적으로 묵인한 결과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연간 1-2만 명에 달하는 마약중독자가 발생하였다.¹⁰⁾

1946년 美군정청은 군정법령 제119호로 「마약단속규정」을 발표하고 보건후생부 약무국에서 단속을 시작하였다. 1947년에 그 실적이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에서 마약중독자가 3,983명이었으며 全國적으로는 약 1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 이후까지 약 6-7만 명에 가까운 마약 사범이 증가하였다.

특히 1950년 한국 동란 중 전투에서 부상당한 자들의 치료용으로 치료용 마약이 외국에서 원조에 의해 도입되어 동 마약이 시중에 유출됨으로써 마약

9) 이상 형사정책연구원(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p. 98.

10) 전경수(1992), 전계서, p. 27.

중매자가 급증하여 당시 중요한 정책 두 가지가 조치되었다.¹¹⁾ 하나는 1952년에 당시 保健部(현재의 보건복지부)산하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마약 감시원 제도를 신설한 점과, 다른 하나는 1957년에 「마약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마약 중독자들의 증가로 1965년에는 마약중매자가 17,257명으로 통계되는 등 그 절정에 달한바 있으나 동년 소위 “메사돈파동”을 계기로 1966년 대통령연두교서에서는 마약사범을 5大 社會惡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그 警覺心이 촉구되고 단속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¹²⁾

<표 2-1> 근대 마약사범 검거현황 (아편에관한죄) (단위 : 명)

구분 순번	연대	약물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송치건수
1	1953	생아편	127	128	206	198
2	1954	생아편	2,031	2,651		1,182
3	1955	마약류		1,470	1,771	
4	1956	마약류		1,238	1,572	
5	1957	마약류		1,396	1,778	
6	1958	마약류		789	789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단기4286, 4288, 4289, 4290, 4291년 경찰연보.

<표 2-1>를 살펴보면 1954년을 정점으로 그 검거인원이 정부의 단속과 함께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고, 1954년까지는 생아편에 대하여 통계

11) 법무연수원(1984), 「범죄백서」, p. 56.

12) “메사돈파동”이란 화공품인 데페닐, 아세토니트릴가, 데메틸, 클로로프로판에서 합성마약 메사돈을 제조하고 이를 설파제, 해열제, 비타민제에 혼합하여 주사약으로 시판함으로써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일부 악덕제조업자들이 합성 마약 메사돈을 비밀리 합성하여 이것으로 보통약품에 혼합하여 제조함으로써 마약 중독자가 이를 사용하였고, 또 마약남용과는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약품을 사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었다.

를 내다가 1955년 이후로는 헤로인, 몰핀, 코카인, 코데인, 액체마약(필로폰) 등을 통계에 추가하여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2> 근대 도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도별 연도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서남	총인원
1954	80	101	282	261	43	359	1,196	53	199	23	50	2,651
1955	184	170	142	76	99	201	621	95	165	12		1,771
1957	85	214	215	267	386	98	210	179	123	1		1,778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단기4286, 4288, 4289, 4290, 4291년 경찰연보.

<표 2-2>를 살펴보면 마약사범의 검거현황이 경남 거의 50%에 가까운 최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경남이 당시 아편의 생산지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에 마약사범이 증가하다가 1955-1957년에는 거의 40%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쟁직후라는 특수상황이 종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2-3> 근대 계절별 마약사범 검거현황 (단위 : 명)

계절 (단기429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검거 인원	55	47	72	156	39	339	606	156	93	39	77	99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 단기4286, 4288, 4289, 4290, 4291년 경찰연보.

<표 2-3>는 계절별 검거현황으로써 특이점은 아편의 수확기인 6, 7월에 가장 많이 검거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3) 1960이후 1970년대 후반

지속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여 오다가 5·16 군사혁명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그 증가세가 급격하게 약화되는 시기이다.

<표 2-4> 1960-1980년도까지 마약사범 검거현황 (년도 / 명)

년도 인원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인원	2386	1865	1524	1637	1579	904	759	727	508	289	275	199	132	92	19	35

자료 : 대검찰청(1986), 『마약백서』.

<표 2-4>는 살펴보면 70년대에 진입하면서 마약사범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70년대 후반 군사정권의 강력한 단속의지에 의해 그 수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大麻의 時代別 變化

중국의학개론에서는 기원전 273년 고대 신농 황제시의 목초서인 중국“醫學概論”에서 인간이 大麻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도 삼유용(삼)으로 각 지방에서 재배되었으나 지금은 허가지역 외에는 그 재배를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마초가 처음 전파된 것은 1965년 월남전 당시 국내에 주둔하

13) 전경수(1992), 전계서, p. 28.

고 있던 미군들이 흡연을 시작 1967년경부터 이들과 접촉하는 접대부 등이 흡연을 시작하였다. 당시 경찰청이나 검찰의 대마사범에 대한 통계는 찾아볼 수 없고 다만 1970년 대검찰청 범죄백서 마약사범 검거현황 편을 보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마초(일명 : 해피 스모그) 흡연으로 인한 폐단도 큰 문제 점을 안고 있으며 이는 대마초를 지방 곳곳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女大生을 비롯하여 여고생 및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20세 전후의 학생과 재수생 그리고 연예계와 주한미군 주변 건달과 接待婦 등 대마초가 확산되고 있었다.¹⁴⁾ 그 이유로는 섬유통 특용작물로 재배가 용이하였고, 제조 방법이 용이하며, 마약과 흡사한 효력이 발생하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가격과 다른 기구없이 흡연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 후 1976년을 전후하여 일반인들에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마약류 사범들이 마약류와 대마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2-5> 1970년 이후 대마사범 현황

(단위 / 명)

년도 인원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건 수	5	32	287	310	411	666	702	209	214	139
검 거 인 원	7	60	338	348	597	952	1,460	639	483	357

자료 : 대검찰청(1979), 『마약백서』.

14) 형사정책연구원(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p. 105.

<표 2-5>는 1970년 이전에는 대마사범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다. 1970년대 이후 대마사범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76년을 정점으로 대마사범 관련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대의 대마사범 대부분 당시 나이로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향정신성의약품

1979년 법률 제3216호로 제정 · 공포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LSD, 암페타민, 바르비탈 등 약118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의 誤用과 濫用을 규제대상으로 1970년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군에 징용되어 軍需工場에서 기술자로 일한바 있던 김화순, 강정봉 등의 “히로뽕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약물이다.¹⁵⁾

향정신성의약품 중 대표적인 메스암페타민인 속칭 “히로뽕”이라는 말은 “필로폰(Philopon)”의 일본식 발음으로서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의 시판 商品名이며 이 말의 의미는 희랍어의 “피로포스”라는 어원을 갖는 “일을 좋아한다”라는 뜻이며 잠을 몰아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품명으로 붙여졌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부는 피로방지 약으로 군수공장의 철야 작업원에게 이 약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승리정” 또는 “돌격정¹⁶⁾”이란 명칭

15) 조갑제(1989), 『코리언커랙션』, 조선일보사, p. 29.

16) 1회 투약시 20여 시간 각성상태에서 노동이 가능하였고, 전쟁시 조종사들이 저기 공격 또는 공습때 불안감과 죽음을 겁내지 않고 명정감에서 정확한 사격을 실시토록 2차 대전 당시 양대 진영에서 공이 활용하였고, 특히 일본군이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을 사용하여 공급하였고 特政隊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약을 사용하였다.¹⁷⁾

히로뽕은 주로 1980년대 초 부산, 마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면서 “히로뽕”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가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社會적으로 큰 問題點으로 대두되면서 “죽음의 백색가루”로 불리우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藥物이다.

<표 2-6> 1970년대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의 검거현황 (단위 / 명)

년도 인원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건 수	62	98	298	218	275	122	66	56	54	30
검 거 인 원	68	112	365	303	353	219	115	131	96	103

자료 : 대검찰청(1970, 1980), 『마약백서』, 1990년대 경찰청 마약계.

히로뽕은 1970년대부터 1986년까지 持續적으로 증가를 보이다가 1987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증가를 볼 수 있는데 이는 1986년과 1988년 양대 국제적 체육행사와 더불어, 활발해진 해외교류 등 시대적인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3가지의 약물을 종합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서울지방경찰청(1999), 「마약류수사연구」, p. 8.

<표 2-7> 우리나라 마약류범죄의 변화추이

(단위/명(%))

연도	마약범죄(%)	대마범죄(%)	향정범죄(%)	합계(100%)
1970	904명(92.3%)	7명(0.7%)	68명(6.9%)	979명(100%)
1971	759(81.5)	60(6.4)	112(12.0)	931
1972	727(50.8)	338(23.6)	365(25.5)1	1,430
1973	508(43.8)	348(30.0)	303(26.1)	1,159
1974	289(23.3)	597(48.1)	353(28.4)	1,239
1975	257(19.0)	952(65.8)	219(15.1)	1,446
1976	199(11.2)	1,460(82.3)	115(6.5)	1,774
1977	132(14.6)	639(70.8)	131(14.5)	902
1978	92(13.7)	483(72.0)	96(14.3)	671
1979	19(3.9)	357(74.5)	103(21.5)	479
1980	128(17.2)	537(72.3)	78(10.5)	743
1981	140(15.4)	553(60.8)	216(23.8)	909
1982	134(13.3)	372(36.9)	501(49.8)	1,007
1983	203(18.4)	478(43.4)	420(38.1)	1,101
1984	202(18.4)	408(39.7)	417(40.6)	1,027
1985	361(30.3)	328(27.6)	501(42.1)	1,190
1986	375(23.0)	392(24.0)	862(52.9)	1,629
1987	239(11.9)	318(15.8)	1,459(72.4)	2,016
1988	268(6.8)	351(8.9)	3,320(84.3)	3,939
1989	857(22.1)	1,025(26.4)	1,994(51.5)	3,876
1990	1,215(28.8)	1,450(34.3)	1,557(36.9)	4,222
1991	838(26.7)	1,138(36.3)	1,157(36.9)	3,133
1992	949(32.0)	1,054(35.5)	965(32.5)	2,968
1993	3,364(50.0)	1,509(22.2)	1,900(28.0)	6,773

자료 : 대검찰청(1993), 『마약백서』.

<표 2-7>를 보면 마약류 사범의 단속현황을 분석할 때 우리나라의 마약류 변화추이를 보면 1970년대 초반까지는 마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가 1980년대 초반까지 大麻가 주류를 이루었고 다시 1990년대 초반까지는 향정신성의약품(히로뽕)사범들의 단속이 그 주류로 마약류가 變化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과 시대별 신종마약의 변화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다루지고 있으며, 마약류는 아니나 身體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환각물질에 대하여 마약류와 같이 주시하고 있다. 최근 靑少年들을 상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198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령에 신나, 도료, 接着劑를 추가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의 환각탈선 문제에 대한 법적인 개입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원래 1963년 법률 제1492호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본드, 신나 등의 흡입행위가 만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80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신나와 接着劑, 도료 등의 환각물질을 추가하여 규제하다가 1990년에 법률 제4261호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한 것이다¹⁸⁾. 아울러 유해화학물질과 더불어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마약류가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고 濫用되고 있는데 이를 신종마약이라고 한다.

신종마약을 살펴보면 합성마약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진통, 鎮靜劑로서 의료에 사용되는 동안 점차 탐닉작용이 생기며 남용하면 유해작용을 나타내므로 마약법에 64종의 합성마약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약물을 규제하기 위해 1977년 「의약품관리법」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는 있지만 규제만으로는 이들 합성마약을 단속하고 예방하기는 力不足이며 신종마약의 등장으로 이에 대한 對策이 시급한 실정이다.

時代的으로 신종마약으로 분류되어 유행하였던 마약을 구분하여 보면, 1950-1960년대는 헤로인, 코데인, 몰핀, 데바인, 양귀비제제인류가 당시 볼 수

1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8),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

없었던 마약류로 남용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1970년대는 대마초 불법사용, 바르비탈염제류 등이 습관성 의약품의 남용시대로 구분할 수 있고, 1980~1990년대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메스암페타민사범이 주종을 이룬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北韓에서의 외화벌이로 필로폰의 생산, 중국 여행객 및 범죄조직, 해외파 유학생들에 의하여 그 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마약류를 유입 그 범람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다.

第 2 節 組織的 次元의 麻藥犯罪의 變化

마약의 남용이 과거에는 미국과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에 국한되었으나 구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번져 世界的으로 확산시대를 맞고있다. 특히 중국 운남성을 중심으로 헤로인 남용이 급증하고 광둥 지방과 홍콩, 마카오를 거점으로 새로운 헤로인 불법거래지역으로 부상하여 소비국인 미국의 최대 공급지로 분석되고 있다.

헤로인의 경우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남미 등에서 주로 사용되어 오던 것이 위에서 언급한 운남성, 홍콩, 마카오 등을 통하여 새롭게 시장을 형성하고 헤로인이 보급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새로운 ‘차이나 화이트’란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 히로뽕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유럽과 미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코카인의 경우 남미를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남미의 코카인 조직들이 필리핀 “일로일섬”에 코카인 농장을 경영하면서 이를 거점으로 일본과 한국 등 동남아시아에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마약범죄 배후에는 마약밀매조직이 폭력조직과 國

際的으로 상호 연계하여 大型化, 組織化되고, 내전과 관련하여 정치 군사적 집단이 마약생산을 주도하고 있다. 그 예로 콜롬비아의 최대 코카인 조직이었던 메텔진 카르텔은 미얀마에 근거지를 둔 슈라의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슈라는 또한 동남아 최대 마약조직 “트라이어드(Triad)”와 결탁, 헤로인 운반 등을 맞고 있다. 라오스내의 호몽, 메오산족 및 태국내 활동중인 반공 국민당 잔류 조직과도 연대를 맺고 있다.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와도 오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동 지역인 레바논은 정치적, 종교적 파벌간의 내전으로 이들의 경비를 위해 마약밀매를 하고 있으며 아프카니스탄 또한 회교반군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여 세계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다.¹⁹⁾ 최근 국내에 메스암페타인의 공급물량의 부족으로 대만, 필리핀 등의 외국산 약물과 미국 등지에서 남용되고 있는 코카인, 헤로인, 크랙 등은 美國內 過剩공급으로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겨냥하여 활로를 찾고 있다. 구 소련과 중국 운남성 등에서 양속 등의 耕作 規模로 보아 인접한 우리나라는 자유스러운 인적 물적 交流의 증가로 그 시장을 개척하려는 마약조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²⁰⁾

1980년대 후반까지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권이었으며, 홍콩과 대만 그리고 미국의 조직에서 經由地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국내 범죄조직과 連繫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 마약밀수와 범죄조직의 變化

마약류 사범을 자세히 살펴보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밀조사범, 원

19) 월간조선(1992), 「월드커넥션」, 5월호.

20) 국가안전기획부(1999), 「국제마약류 실태와 통제」.

료구입 및 자금책, 판매책, 그리고 소비(투약자)자이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마약류 사범의 밀조 技術者 와 그 주변에서 원료구입과 자금책 및 판매책이 밀조사범의 지휘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추세로 밀조 즉, 제조기술은 아무나 전수하여 주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나 부, 자간에 代를 이어서 전수 받아 밀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마약원료의 구입과 판매 루트에 대한 비밀성 유지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1) 밀조 계보

우리나라의 밀조사범들의 根源으로는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일본에서 직접 히로뽕을 제조 사용하다가 1960년대 일본의 강력한 단속으로 일본 內에서 히로뽕을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자 세계 제2차 대전당시 일본에서 제조기술을 습득하여온 우리나라의 제조 技術者들을 포섭하여 그때부터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제조하게 되었다. 밀조업자와 국내 범죄 조직과도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활동하여 오다가 1996년 이후 지역적으로 부산, 대구, 마산, 인천, 군산 등 지역 조직폭력배와도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밀조사범을 3세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세대는 19세기말인 1888년 일본의 ‘나카이’가 韓醫學에서 천식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황에서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1919년 ‘오카타’가 합성을 성공하였고 1914-1942년경 일본에서 一般人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중에 많은 사용으로 인하여 종전 후 중독 및 使用者가 증가하여 수십만명에 달하였다.

196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정부의 단속으로 인하여 제조를 할 수 없게 되자, 야쿠자 등이 한국에 들어와 제조기술자

를 포섭하여 제조를 시작하였는데 그 代表的인 1세대 인물로는 ‘정강봉(사망, 부산거주), 김화순’(사망, 제주도 거주)을 들 수 있다.

이들의 共通的 특징으로는 이들을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에 국내 히로뽕 제조 역사가 시작되었고 순도를 측정 할 수가 없어 제조책 등이 순도를 직접 측정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직접 혈관에 투약하는 등 국내 첫 生體實驗을 시작하였다. 또한 부산에서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밀수출하였고 당시에 히로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조를 하여 주던 자들이 2세대의 주역들로 성장하였다.

둘째, 제 2세대는 이항순, 최재도, 박세우, 오봉서 등으로 우리나라 향정성의약품사범 중 제조 기술자인 總長(당시 제조기술의 수준에 따라 총장, 학장, 교수로 호칭함)정도의 수준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 1980년대까지 히로뽕 제조1인자의 자리에서 군림하였다.

셋째, 제 3세대는 1세대의 정강봉 계열인 오봉서와 김창기가 2세대라면 박우량과 김덕근은 3세대로 구분되고 1세대 김화순 계열의 이항순, 최재도, 노병률, 안성인, 박세우, 김채복이 2세대라면 2세대 최재도 계열에 김효중, 배성열, 박기호와 박세우계열 강홍길, 임홍배가 제3세대로서 제3세대들은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어 그 활동이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일본, 필리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청 일선 수사관 자료를 통하여 마약밀조 세대별, 지역별, 활동 연대별로 그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8> 향·정 및 아편 밀조자 연혁

순번	제조자	연 령	활동연도	활동무대	비 고
1	이상조	70세	60-80	서울, 부산	히로뽕
2	이기호	70세	“	“	“
3	이시수	61세	“	“	“
4	이황순	63세	70-미상	부산, 일본, 밀반출	“
5	심상호			전국	“
6	한 구			“	“
7	노병춘	48세	80-미상	부산, 전국	“
8	신복래	68세	“	전남, 전국, 광주	“
9	이무창	54세	“	“	“
10	설어부	53세	“	부산, 경남	“
11	설귀만	45세	80-미상	부산, 경남	“
12	신 강	47세	80-미상	서울, 전국	“
13	안성인	70세	80-미상	서울, 전국	“
14	김달웅	58세	60-미상	부산, 경북, 경남	“
15	김연호				“
16	오봉서	69세	60-미상	부산, 경남	“
17	박우량	57세	70-미상	경부, 대구	“
18	정인명	68세	80-미상	전북, 부산	“
19	신정균				“
20	변희진	69세	80-미상	부산, 전국	“
21	최상만			부산	“
22	김진국	69세	70-90	부산, 대구	“
23	손남경	45세	80-미상	“	“
24	김자현	65세	80-미상	“	“
25	김찬기	61세	70-미상	서울, 경기, 강원	“
26	김성중	68세	“	“	“
27	박정열	67세	“	“	“
28	우득선	76세	60-미상	부산, 전국	“

순번	제조사	연령	활동 연도	활동 무대	비고
30	안성인	71세	60-미상	서울, 전국	히로뽕
31	김철용	52세	70-미상	부산, 서울, 전국	“
32	임홍배	66세	“	부산, 전국	“
33	강홍길				“
34	김덕근	사망			“
35	최재도	65세	60-미상	일본, 전국	“
36	김명근	66세	60-미상	서울, 전국	“
37	윤상묵				“
38	강동규	72세	60-90	서울, 경기	“
40	최상만	59세	70-90	부산, 전국	“
41	변계활	61세	“	부산	“
42	박준수	58세	80-90	전국	“
43	원삼천			박준수, 김군수공범	“
44	김태규	54세	70-90	부산, 전국	“
45	우종건	53세	“	대구, 전국	“
46	이준기	52세	“	대구	“
47	오봉서		70-90	전남	“
그외 다수가 1990년대 제 3세대로 구분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 40-50대의 연령층으로 부산과 대구및 서울을 근거지로 활동하다가 대부분 현재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삼수, 제조 및 밀반입 총책 60년대3대 거두로 활약					
허봉용, 한삼수와3대 거두					
노병률, 현재수감 중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였으며 2차세계 대전당시 일본에서 기술을 터득하여 김화순으로 부터 제조기술을 전수 받음.					
김화순, 사망, 60-80년대가 주로 활동하였으며 히로뽕계의 시조로 불리우고 노병률의 사부이기도 하다.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1999), 『마약류수사연구』.

2) 밀수의 變化

1960년대 이전에는 아편, 몰핀, 헤로인, 코데인 등 아편제제가 大部分 이었고 드물게 코카인도 사용하고 있었으며 중국이나 38선 이북 등지에서는 코카인, 생아편 등의 마약이 밀수입되어 流通되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이기에 밀수하기에 용이하였고 이 시기에는 고위 當局者와 그 부인들이 일확천금을 노리며 서울시내 곳곳에서 소위 ‘아편국’이 형성되어 밀수되거나 밀 경작된 아

편이 유통되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메사돈파동’ 이후 강력한 정부의 단속의지와 단속기관의 統制政策으로 그 소비 및 공급이 감소하였다. 1970년대는 주로 히로뽕 중간 경유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만 하여도 세관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이나 염산에페드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당시라 관심 밖의 물질이라 할 만, 공황 및 인근 해역에서 수많은 마약밀거래를 하였다.

1970년대에는 대부분의 단속은 밀조사범을 대상으로 하였고 表面的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표방하였지만 內面的으로는 일본인들이 1960년대 대마도를 밀수 기지화 하여 한국으로의 밀조를 방조하고 오히려 육성하여 한국에 피해를 주었다면, 일본으로부터 마약 밀조기술과 밀매 수법을 터득한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하여 부메랑이 되어 한국에서 제조한 히로뽕을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일본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당시 무역역조에 마약 밀매자들이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등 대 일본 민족감정이 깔려 있어 마약밀매를 묵시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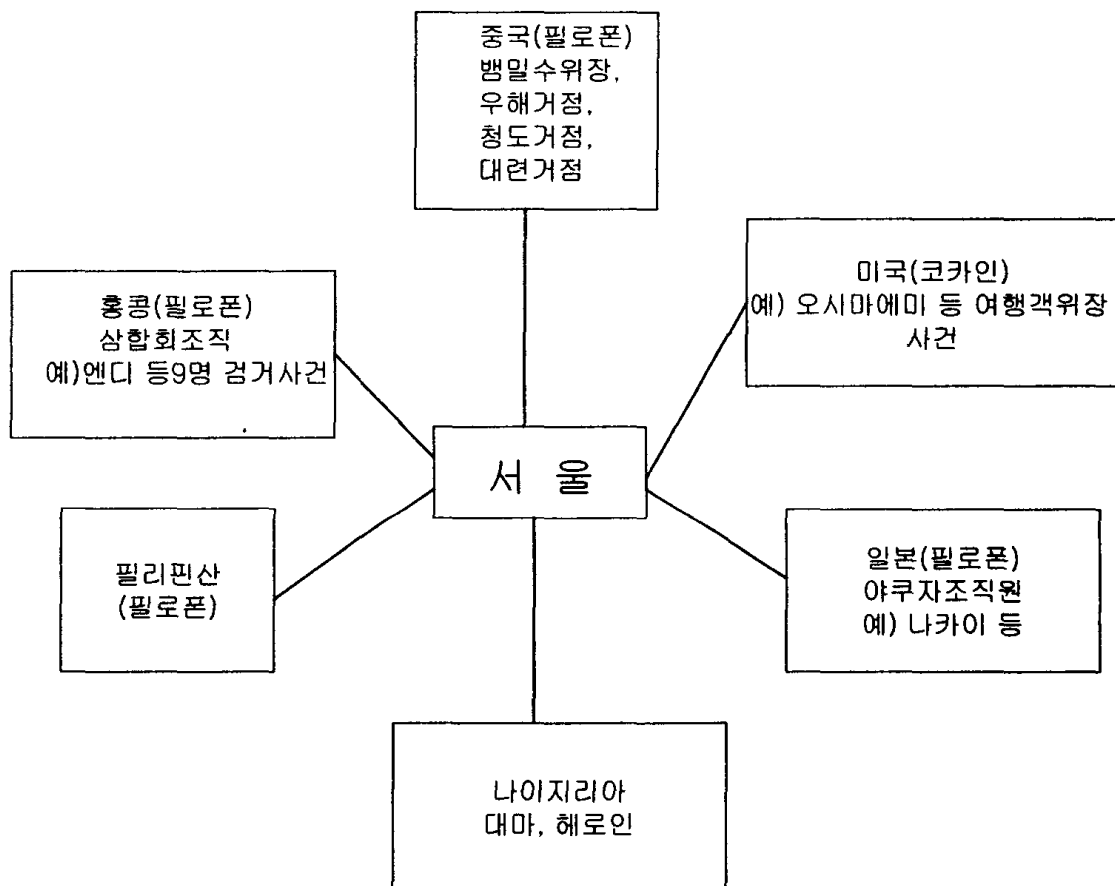
또한 위와 같은 인식이 마약밀매업자들의 비호세력으로 당시 무수히 검거되었던 마약감시원, 경찰관, 보사부 마약관련 公務員, 檢察 등 관계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회색시켰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서는 당시 공화당 정부의 마약 밀매의 묵인이 있어 보인다는 여론이 일기도 하였다.

1970년 후반에는 대마초에 대한 단속이 심하여지자 구하기 쉽고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신경안정제계의 의약품을 대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시기에 美軍基地촌 주변을 대상으로 헤로인, LSD 등이 밀수입 전파되었고 점차

21) 조갑제(1983), 『코리언커넥션』, 월간조선, p. 276.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약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자 비로소 선박 및 미군기지촌 등의 밀수입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암페타민 밀제조와 밀수입의 단속이 강화되고,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줄어들자 국내 소비층에 대한 유통이 확산되어 히로뽕이 국내 사회 각층으로 확산되었다. 더욱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출입국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마약류의 밀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림 2-1] 마약관련 밀수경로

자료 : 조갑제(1983), 『코리언커넥션』, 월간조선, 12월호.

3) 국내 麻藥犯罪 조직과 주변국가의 組織의 연계와 變化

國際的으로 유명한 마약류 관련 조직으로는 미국의 마피아, 모터사이클갱, 콜롬비아의 메델진 카르텔, 칼리 카르텔, 일본의 야쿠자, 마얀마의 SUA, 중국의 삼합회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이 마약류를 범죄와 연관하여 밀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일본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야쿠자와 국내 밀조자 및 폭력조직과 연결되었던 사건들이 있으며 1980년대 들어서 미국의 마피아와 중국의 삼합회 등과의 연결 사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그 조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본(야쿠자)

18세기 중반 보부상집단 ‘데끼야’와 전문 도박집단 ‘바쿠토’를 모체로 성장하여 2차대전후 사회불안을 틈타 暴力集團化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현재 야마구찌구미(33,600명), 스미요시 카이(10,800명), 이나카와 카이(8,800명)등 3천여개조직 하에서 8만에서 10만여명을 추산하는 거대조직으로 마약, 賣春, 賭博, 建設, 運輸業 등에 깊숙이 개입하여 그 이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에서 「폭력단대책법」에 의거 강력한 단속을 하자 미국, 러시아, 중국 등으로 해외 진출하여 국제적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재일교포 출신 야쿠자(전체의 약1%)들이 우리나라의 일부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밀매 등 姉妹結緣을 맺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²⁾

22) 임대환(2001), 『마약밀수 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p. 112.

<표 2-9> 일본조직과 밀조사범과의 유착관계

야마구찌 구미파	이나가와 가이 파	도쿄다이(청부폭력조직)
사카우메구미두목 가네야마	부두목 니시야마	가네다파두목 가네다 마사오
한삼수와 연계	한삼수와 연계	한삼수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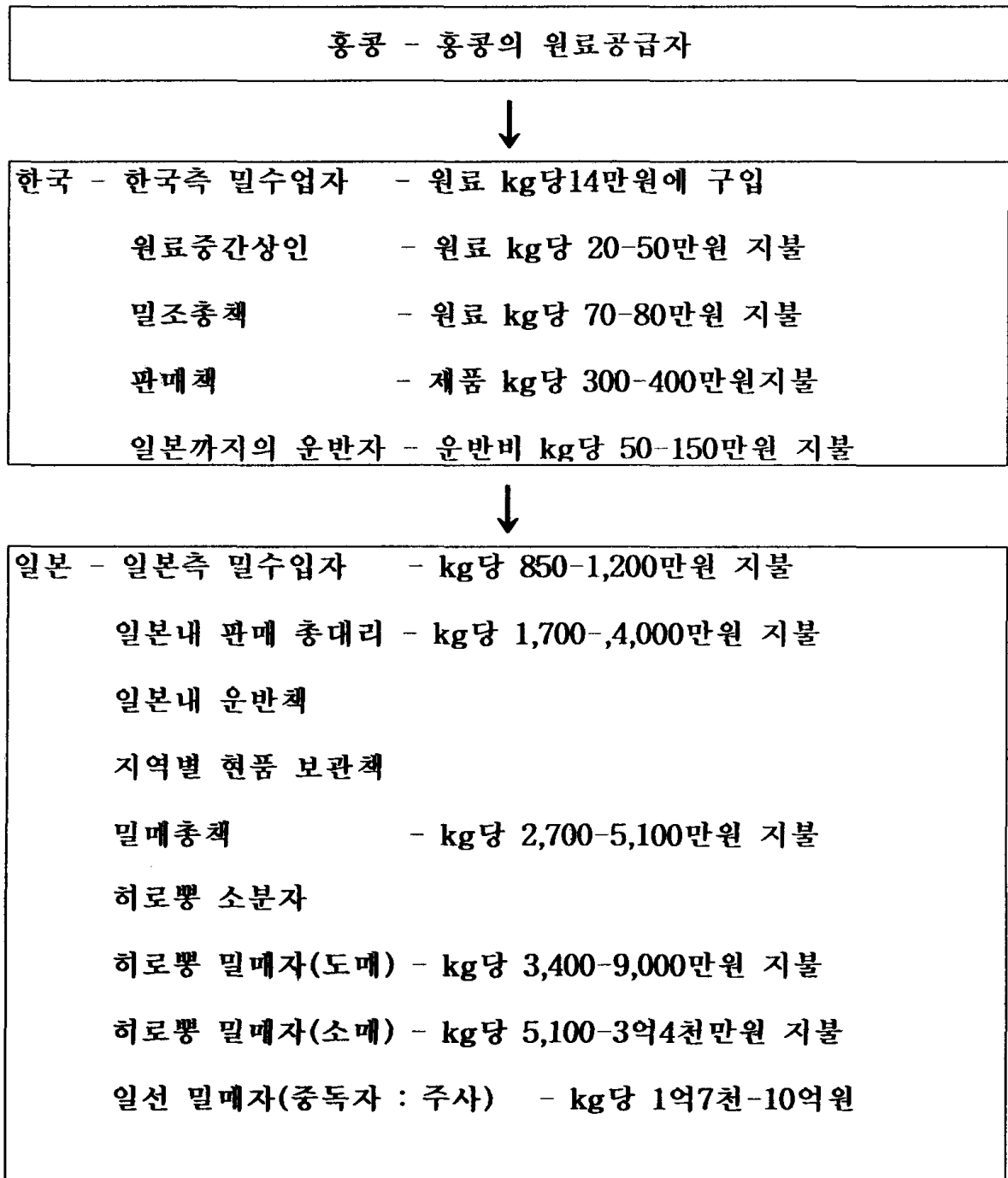
자료 : 서울지방경찰청(1999), 『마약류수사연구』.

(2) 중국(삼합회)

1674년 복건성 소림사 승려5명이 명나라 복원을 위해 ‘천지회’라는 민간비밀단체를 결성 阿片戰爭, 공산혁명 등을 거치면서 범죄조직으로 변질되어 천지회에서 삼합회로 이름을 바꾸어 중국본토, 홍콩, 대만 등 50여개의 20-30만 명의 조직원을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여 不法을 저지르고 있으며, 황금의 삼각지대 생산마약의 판매망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를 미주지역의 유통되고 있는 헤로인 밀매의 중간경유지로, 필로폰의 소비지로 이용하며 국내거주 화교, 마약조직 등과 연계 마약류를 밀 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²³⁾ 홍콩 등에서 물건을 입수하여 한국에서 제조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과 연관되어진 이들 범죄조직들이 엄청난 暴利를 취하였던 것이다.

23) 임대환(2001), 『마약밀수 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p. 113.

[그림 2-2] 히로뽕 폭리의 유통구조



자료 : 조갑제, 「코리안 커넥션」, 월간조선, 1983년 12월호.

2. 主要事件

1) 1960대 이전

우리나라 근대 마약의 역사는 日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이전 일본은 전쟁이후 히로뽕 등 마약류에 대하여 그 심각한 피해상을 인식하고 1951년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1954년은 일본에서 검거된 인원은 1-2백만 명으로 그 피해상을 짐작케 한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1956년 이후에는 그 단속인원이 1천여명 대로 極減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단속으로 인하여 밀조 및 밀매자 들이 해외로 그 루트를 개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었는데 당시 가장 인접하여 있는 국가이고 식민지 국가이었던 한국인들을 일본으로 징용하여 마약제조 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당시 일본에서 밀조기술을 배웠던 한국의 제조자들이 전쟁이후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당국의 強力한 단속으로 인하여 해외로 도주하게 되었다. 당시 일본에서 밀조사범으로 이름을 날리던 한국인 정00가 1953년 8월 오사까 경찰에 히로뽕 118kg을 밀조·밀매혐의로 구속되었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일본 內에서도 在日同胞와 마약에 관련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일본의 1차 히로뽕 시대인 1954년에 검거된 사범 중 한국인이 14%이고 일본 내 在日僑胞가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밀조범은 55% 밀매범은 21%가 한국인이 관련되었다는 통계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2) 1960-1970년대 후반 (화이트 트라이앵글 시대)

1960년대 이후 日本에서 韓國으로 도피한 밀조업자를 중심으로 홍콩과 중국을 원료공급기지로 하고, 한국을 제조지로 일본을 소비지로 하여 3각 구도를 갖추게 된다. 國際的 범죄 조직의 밀매로 당시 미얀마, 라오스, 타일랜드의 아편밀매인 ‘골든트라이앵글’에 맞먹는 국제적 범죄로 ‘화이트 트라이앵글’의 범죄조직력은 당시 일본폭력조직인 야쿠자 10만명과 한국의 밀조 밀매범 약 2천여명 그리고 홍콩, 대만의 원료 밀수꾼 수백명이 거대조직을 連繫하면서 활동하였다.

이들의 당시 매상고는 당시 일본 경찰의 추정에 따르면 1조 6천억원에 달하였다. 한국의 대일 히로뽕의 수출액은 약 2백억원으로 원료를 수입하여 한국을 거치면서 약 50배로 일본으로 건너가서는 약 80배의 폭리를 취하였다. 국제적 범죄조직으로 1975년경 일본에 밀반입 혐의로 일본 경찰에 입건된 심 00 (당시40세)가 한국 최대의 마약 밀조범 이었던 한삼수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일본에 운반하던 히로뽕은 1kg당 150만원씩을 받고 운반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도 그 이익과 조직의 巨大性を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주요사건들을 살펴보면, 196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마약 밀매 밀조의 원조를 1981년 檢察발표지에서도 있듯 김화순을 1세대로 보고 있고 김화순은 히로뽕계의 ‘교수’로 통하며 1970년에 서울지검 마약반에 의해 일당 8명과 함께 20kg의 히로뽕을 압수하면서 마약밀조 및 밀매사범으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정00도 같은 세대의 인물로 평가한다.²⁴⁾

1965년 일명 ‘메사돈파동’은 당시 선호하는 마약류를 구입하지 못 할 경우

24) 檢察誌(1981), 당시 부산지검 마약 담당검사 이경재의 견해와 1983년 보사부 한 일간담회외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김화순을 1세대로 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정강봉을 1세대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미약하다, p. (?).

다른 대용약물의 남용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준 사건으로 한쪽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약물남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준 사건이다.²⁵⁾

일본의 묵인하에 당시 대마도 부근에서 일본과 한국의 밀매시장이 형성되었다. 대마도 시대에 마산 등지를 據點으로 일본 밀수출의 정점시기인 1970년대 중요 사건으로는 1971년 일본 경찰에 의해 나고야항에서 제7한진호(4백 25t급)에서 히로뽕 9kg을 수색하여 밀수혐의로 검거한 사건이 代表的인 사건이다.²⁶⁾

한편 1968년 히로뽕 15kg을 적발한 사건으로 보면 당시 검거된 유00(당45세)의 진술에 의하면 “1964년부터 정00가 한국으로 건너와 일본 야쿠자와 연계하여 밀매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²⁷⁾ 1975년 서울지검에서 히로뽕 밀매범으로 이00와 장00이 검거되면서 당시 히로뽕이 정00의 공장에서 밀조된 물건이라고 하는 등, 이를 보면 정00가 최초의 한국 밀조자 이었다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일선 수사관과 관련 밀조자 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와 비슷한 시기에 활약한 김화순이 정00보다 앞선 1세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kg당 제조기술료는 80만원선 이었고 技術者를 양성하기 위해 2주 동안 敎習料는 약2,000만원 정도였으나 그도 여의치 않았고 대부분 가족이나 직계조직원에게 세습되었던 것이고 이들은 조직없이 단독으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활동하였다. 이 정00은 당시만 하여도 히로뽕에 대한 규제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과상으로는 마약 밀조범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關稅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정00의 검거는 1973년 부산지검에서 검거되었다.

또한 당대의 초대 운반책으로 1972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실행은 받

25) 형사정책연구원(199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p. 66.

26) 중앙일보, 『15년 간의 대마도 밀매가 막을 내리고 있다』, 1968/12/25.

27) 한국일보, 1968/4/7.

은 최00는 표면상으로는 시계, 금괴 등을 밀매하던 밀수업자로 알려졌다으나 그 조직원 중에 당시 마약밀수의 重犯들이었던 이00, 정00, 천00 등도 최00의 하수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당시 국내 폭력조직으로는 마산을 중심으로 ‘칠성과’ 두목 이00(당 42세)와 ‘20세기파’ 두목 정00(당 39세)가 마약에 손을 대고 일본 야쿠자와 연계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당시 경찰, 검찰, 세관과 밀착관계를 형성하고 국내에도 판매를 시작하여 최초로 1975년 서울지검에서 밀매단 5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의 우두머리인 남00(당 47세)의 증언에 의하면 1년 동안 4.5kg의 히로뽕을 국내 中毒者들에 팔았다는 증언에 의해 한국에도 판매조직과 중독자가 있음이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1970년대는 한국의 대부분의 조직이 일본의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1974년 마산지검에서 염산 제조회사와 託兒所에서 비밀 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 12kg을 만들던 조00를 포함하여 일당 5명을 구속하였는데 당시 이들도 일본 폭력단 ‘나카지마조’의 지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터판사건’에서 판매책 김00이 表面的으로는 두목으로 나타나있으나 실질로는 ‘20세기파’의 두목으로 70여명의 조직원을 두고 히로뽕과 폭력조직을 연계한 것으로 밝혀졌다.²⁸⁾ 1975년까지 급증하던 히로뽕 사범들이 1976년에 들어서 1/10로 급감하고 있다는 검찰통계를 보면 당시 단속의 규모와 그 노력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가장 주목을 받는 사건은 1978년 가을 수원지검 인천지청 윤00검사가 맡게된 간단한 사건을 계기로 ‘만다린호사건’이다. 1979년 만다린호(2

28) 조갑제(1984), 「쫓는자와 쫓기는자」, 월간조선, 1월호.

천5백t급)가 대만에서 대나무를 싣고 홍콩으로 떠나고 이틀 후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만다린호를 수색하여 수많은 밀수품을 압수하였다.

이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파나마 선적의 윤타이호(1천6백t급)도 적발하였다. 이 배에서도 수많은 밀수품을 압수하였고 그 외의 14척의 상선을 통하여 부산 인천 목포 등으로 밀수를 하였다는 情報를 입수 80년 1월부터 김00이 가지고 있던 밀수품 중에서 히로뽕의 원료였던 염산에페드린 250kg을 압수하면서부터 단순 시계밀수 사건에서 히로뽕 수사로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시작되었다. 박00외 장00을 1980년에 검거하면서 최초로 밀조공장을 발견하고 그 일당 3명을 검거하였으며 50여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起訴하게되는 초유의 사건이 發生하게 되었다.

3) 1970후반-1980년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본으로 마약밀매를 하고 있었으며 주요 사건과 인물로는 문00(당40세)로 1980년 마산 市警에서 지명수배자로 1981년 일본 나라따공항에서 서00을 히로뽕 3.78kg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하면서 그 배후에 문00을 지목하였다.

1980년 마산지검에서 적발한 300kg밀조사건의 원료 공급책으로 한삼수와 문00을 지목하고 한삼수 등5명의 밀조사범을 검거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당대의 최고 밀매업자였던 문00은 현재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부산 마약감시반에 의해 이00외 6명이 히로뽕 1kg의 소지혐의로 검거되었다. 이00는 문00의 하선책으로 밝혀진 인물이며, 1980년 이00의 집에서 발견된 지하밀조공장의 발견이 만다린호 이후의 최대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히로뽕 제조사범의 쇠퇴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1981년 마산 인터체인지에서 포니와 트럭을 이용하여 밀조를 시도하던 김 00(당36세)외 2명을 검거하였는데 이들은 이동하는 트럭을 이용하여 5kg의 히로뽕을 제조하였다.²⁹⁾

1981년 일본 도오코 경시청에서 정00을 검거하면서 ‘신조선 사건’으로 불린 유명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1950년대 일본에서 활약하던 밀조범 정00의 아들이 검거된 사건으로 그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밀조하여 일본으로 밀매를 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들이 家族들로부터 세습되고 조직화되고 있었다는 근거인 것인데, 1982년 히로뽕 압수량이 67.9kg이었는데, 1983년에는 그 압수량이 10kg이상이 감소하였고, 1983년 마산지검에서는 밀조공장 13개소를 적발하였다. 당시 마산지검에서만 1981년 9월부터 1982년 7월까지 20개 조직 1백명 이상의 마약사범을 검거하였고 이후 마산을 중심으로 하던 밀조공장이 단속의 강화로 산간이나 전국적으로 隱密한 곳으로 이주하는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 또한 1983년 마산지검에서 한국,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3각 구도의 붕괴가 시작된 결정적 사건은 장00외 14명을 검거하고 마약관련 당대 최고의 巨物들 17명을 수배하게된 사건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 조직원에서 社會的 신분으로 탈바꿈하여 외형상 마약거래와 무관한 사업을 이용한 루트를 개발하고 있었던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었다.

29) 월간조선(1990), 「히로뽕 전쟁」, 3월호.

<표 2-10> 압수량으로 본 히로뽕 공급루트

연도 루트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한국	56.4%	80.9%	86%	76%	94%	76%
대만	27.5%	0.8%	14%	24%	0%	24%
홍콩	15%	18.3%	0	0	6%	0
압수량	66.3kg	71.9kg	110kg	102.8kg	73kg	58kg

자료 : 일본경시청(1983년 11월 통계)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일본의 단속이 강력하게 진행되자 한국의 밀조사범들은 다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일부 밀조는 내수시장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도, 1985년 일본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대만제가 63.4%, 韓國産이 20.8%로 대만에서 밀조되어 수입되는 양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⁰⁾

일본이 1964년 도쿄 올림픽과 1970년에 오오사카에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히로뽕이 급증하였듯이 1986년과 1988년 양대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조직들은 한국 시장들을 겨냥하였고 실제로 1980년대 후반 마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히로뽕이 퍼지게 되었으며 이에 1988년 부산지검에서는 부산전역에 걸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펴 당시 히로뽕 사범만 98명 검거하기도 하였다.³¹⁾ 당시 대검찰청 초대 마약과장으로 특별단속을 指揮한 유창종 검사는 현재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마약은 統制權 안에 있다고 발표하였다.³²⁾

30) 조갑제(1984), 「히로뽕 지하제국 탐험 제3부」, 월간조선, 2월호.

31) 조갑제, 상계서, 2월호.

32) 월간중앙(1989), 「마약전쟁 안전지대는 없다」, 5월호.

<표 2-11> 1988년 부산지검 검거 職業군 통계

(단위/ 명)

직업 비율	무직	상업	유흥업 관련자	회사원	농,공 어업 및 율러너	연애인 주부	학생	노동자	기타
(총)100%	32%	18%	17%	6%	각5%	각3%	2%	1%	14%

자료 : 월간중앙(1989년 5월호)

4) 北韓 관련 사건의 變化

북한은 1970년 이후 극심한 외화난 타개를 위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마약의 생산과 밀매 등을 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 왔으며 주로 외교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생아편으로 개성 약초원, 영변 약초공장, 강원도 천내군 농장 등지에서 양귀비를 재배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³³⁾

특히 1989년 이후부터는 山間 오지 등에 양귀비를 대량 재배하기 시작하여 함경북도 개마고원 일대에 40만평, 양강도에 20만평 등 총 130만평 규모의 양귀비 전문재배농장을 조성하여 연간 3t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아편은 헤로인, 몰핀, 코데인으로 정제되어 밀수출되는데 북한은 1970년대 초에 태국, 미얀마, 네팔 등에서 아편을 구입, 제3국에 밀매하였으나 1970년 말부터 당 차원에서 함경도를 비롯하여 양강도, 황해도 등 산간지대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직접 생산 밀매를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는 동구권의 붕괴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변, 평양, 개성 등까지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마약사업에 본격 개입하였

33) 국가안전기획부(1993), 『국제마약류 실태와 통제』, p. 93.

다.³⁴⁾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명명하고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함으로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인민무력부 등이 총동원되어 양귀비 생산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전후로 북한 관련 사건을 살펴보면, 1976년 10월 북한대사 길재경 등 5명이 대마초밀수 혐의로 노르웨이로부터 추방당하였다. 1977년 3월 북한 공관원 마약수집 밀매로 네팔로부터 공관원이 철수하여야 하였다. 1982년 12월에는 북한 파나마 합작회사의 북한요원이 마약밀매 혐의로 2명이 체포당하는 사건이 있다.³⁵⁾

최근 북한은 일본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고 있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대사관, 국경무역상, 상사원 등 외교특권을 이용하여 외교행랑 등을 통해 헤로인, 필로폰 등을 밀매하고 있다.

특히 길림성 등 동북 3성을 아편, 헤로인, 필로폰의 주요 밀매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한의 마약범죄는 궁극적으로 외화벌이가 목적인 만큼 마약밀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對南工作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주재 북한 공작원 및 고정간첩, 러시아와 중국동포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 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³⁶⁾

34) 국가안전기획부(1998), 「21C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 p. 38.

35) 국가안전기획부(1993), 「국제마약류 밀매와 통제」, p. 96.

36) 국정원(2001), 「마약류 생산실태」, p. 95.

第 3 章 麻藥政策의 一般論

第 1 節 犯罪化

麻藥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根本을 흔드는 약물로 인식되면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 역시 마약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嚴罰主義를 채택하고 강력한 억제 정책과 단속활동을 하여 왔다. 또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陰性的인 점과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마약류 공급자는 그들이 표면상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知能犯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밀조자 들의 전문성이다. 특히 제조기술에 대해 국내 밀조자들은 家族간에만 전수가 이뤄질 정도로 은밀하게 전수되어 마약의 순도와 약효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전문화되어 있다.

둘째, 공급책들의 전문성이다. 이들은 다양한 공급 루트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동원하고 殺傷무기로 중무장하여 국경을 넘나들면서 수입, 제조, 판매, 투약 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수요자들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까지 마약사용자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정책과 엄벌주의 형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판매책과 수요자들간에는 긴밀한 수범을 동원하여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³⁷⁾ 최근에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그 판매범위가 한층 확대되고 廣域化되어 가는 추세이다.

37) 강민수, 『마약류 범죄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 6.

마약을 매개로 한 조직범죄의 經濟的 기반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약소비에서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고 마약정제과정에서 필수적인 아세톤과 같은 마약관련 화학물 밀매, 무기밀매, 정치권의 부패가 밀접하게 상호 연결되어 사회를 좀먹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결고리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關稅廳과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정보력과 외국 정보기관의 사이에 통제배달과 같은 國際的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유엔과 世界各國은 마약 재배를 대체할 대체작물, 재배박멸, 군사화 등의 전술 등을 동원하고 있다. 대체작물이란 양귀비나, 코카나무,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生産國들의 농민들에게 천연마약대신 오렌지와 같은 환금성 작물을 재배, 수확하게 유도하는 것이다. 재배박멸은 생산국의 경찰 등을 동원하여 제초제를 공중에서 투하하는 것이며, 군사화는 ‘마약과의 戰爭’을 宣布하여 마약퇴치에 노력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세계 각 국과 우리나라도 麻藥을 犯罪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이다.

第 2 節 비범죄화(합법화)

비범죄화는 마약류 범죄 중 제조, 수출입, 판매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별 이견이 없으나 개인적 사용행위 또는 이를 위한 단순 소지 소유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첫째, 他人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를 처벌함은 개인 幸福追求權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합법마약으로 불리는 담배와 알코올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마약류만을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의 위배라는 주장이다.

둘째, 약물사용을 처벌하게 되면 처벌이 두려워서 치료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큰 범죄의 길로 가게된다는 주장이다.

셋째, 現實的으로 嚴罰主義가 마약대책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유럽국가들에서는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범죄화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네덜란드의 경우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훨씬 느슨한 비범죄화 혹은 ‘부분적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벌금 형으로 유도하는 비범죄화는 效果的인 對策이 될 수는 없는 것으로 치료재활에 무게를 두고 현행 법규내에서 보호처분의 이념에 따라 治療監護, 治療保護 등의 제도를 활용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³⁸⁾

합법화의 경우 미국 네바다 중에서 최근 2002년 마리화나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DEA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첫째, 마약사용 비용증가와 위험의 지각력감소; 둘째, 유해마약에의 接近과 공급의 증가; 셋째, 수요, 사용, 남용 및 중독의 증가; 마지막으로, 法的으로 허용되면 마약남용에 대한 社會的 제재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³⁹⁾

38) 민생치안연구소 (1994), 『국제화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대책』, 7월호, p. 46.

39) 임대환(2001), 『마약밀수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p. 291.

第 4 章 韓國의 國家 麻藥政策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은 일관되게 嚴罰主義를 채택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정책의 變化가 있었는데, 1960년대는 강경정책이 핵심 기조였다. 그러나 약물사용의 위험에 대한 지나친 과장과 不正確한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강경전략은 靑少年들에게 오히려 남용되었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1970-80년대는 약물예방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남용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에 입안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역시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엄벌주의를 택하였다. 이는 특히 것으로 약물규제법규를 보아도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1980년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 11조를 개정하여 마약의 수출, 수입, 제조 등의 행위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新設한 것이다.

그러나 약물사범들에 대한 정책이 강력한 단속만으로 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은 1980년대에 들어서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면서 特別예방적 작용의 관련 법제정과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결과 刑罰의 입법뿐만 아니라 중독자들에 대한 사후적 치료보호제도들이 규정되었다.⁴⁰⁾ 同法에 의하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치료보호기관을 설치하고 1990년 大統領령으로 제정된 「약물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의해 일정한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치료보호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1992년 4월에 국공립 17개 민간5개 총 병상 수 240개가 지정되었다. 혐의자에 대하여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強制的으로 중독여부의 判別 검사와 치료보

40) 치료 및 재활규정, 제12조3의 1항에서 5항까지, 제12조의2에 보고규정 등.

호를 실시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본인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해 自發的으로 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벌이 금고이상의 죄를 범하거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사회보호법에 의해 충남 공주에 있는 치료 감호소에 강제적으로 수용되어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감호이외에 형벌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먼저 치료감호를 집행하고 형벌이 나중에 집행되도록 하였으며 치료감호기간을 형에 算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곡정신병원내에 약 200병상의 약물중독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多角的인 법적 제도를 완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고 법 재정의 취지에 맞게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단계와 관련되는 보호관찰에서 검사는 범죄수사 중 형법상 양형 조건이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한다.⁴¹⁾ 이것은 비행 청소년을 保護觀察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사 중 검사의 재량으로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15조)에 규정하는 등 약물사범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법적으로도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마약관련 주요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1년 군사혁명이후 강패 檢舉령에 의해 전국 강패조직원 약 1,500명을 검거하고 이중 965명을 국토개발사업단에 투입하는 등 組織暴力배의 단속과 함께 일부 마약관련 사범들이 포함되어 단속되었다. 특히 1966년 대통령 연구

41) 형사정책연구원(1999),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p. 295.

교서에서 마약범죄를 社會의 5대 악의 하나로 규정하여 경각심을 촉구하였다.⁴²⁾

1989년 2월 대검 마약과를 설치하고 人身賣買와 가정과괴범, 不正食品, 組織暴力과 함께 마약을 ‘사회5대 악’으로 규정하고 그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강력한 단속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는 1986년과 1988년 양대 올림픽과 확산하는 國際的 交流 등으로 히로뽕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인식하고 밀조, 밀매 사범들을 일본과 협조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이며 실질적으로 1989년 3월 특별단속기간 1개월만에 마약사범 3백93명을 검거하여 그 중에서 293명을 拘束한 실적을 거두기도 하였다.⁴³⁾

第 1 節 麻藥관련 法律政策의 變化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법률은 총19개로 구분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保護觀察法」 등의 부가적인 법률 등이 있는데 그 중 大部分의 법률은 2000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統合, 제정되어 既存의 法律들은 폐지되었다. 이들의 법률의 변천과 그 理由 및 주요 判例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자.⁴⁴⁾

42) 대검찰청(1983), 『마약백서』, p. (?).

43) 월간중앙(1989), 「마약전선 안전지대는 없다」, 5월호, p. 330.

44) 대법원, “법고을CD”(법 개정관련 및 사건관련 주요 판례)를 참조 할 것.

1. 麻藥法

1) 마약법의 種類

마약법은 1946년 「미군정법령」 제119호 「마약단속규정」에 이거 보건후생부의 약무국이 감시업무를 개시하면서 제정한 것을 효시로 하여 1949년 10월 대통령령 제200호 보건부령으로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다가 1952년 12월 폐지하고 다시 1957년 4월 「마약법」을 제정하여 통합법률이 제정될 당시까지 총10번의 개정을 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중간에 1967년 9월에 제정된 「마약대책위원회규정」이 대통령령 제3214호로 제정되어 부정마약과 단속 및 보건부장관에게 필요한 마약정책 및 법률자문을 위해 운영되다가 1977년 10월에 폐지되었으며 그밖에 주요 法으로는 「마약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마약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마약법시생규칙」, 「마약법시행세칙」,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마약취급업자면허신청에관한수수료및면허증갱신규정」 등이 있다.

또한 마약취급자면허에 관하여, 「마약취급업자면허신청에관한수수료및면허증갱신규정」이 1969년 11월 「보건부령」 제9호로 제정되었다가 1969년 6월 보건사회부령 제268호로 폐지되었고, 「마약취제규칙폐지에관한법률」이 1961년 5월 법률 제611호로 제정 되었다가 폐지되었다.

2) 제정연혁

「麻藥法」은 1957년 4월 법률 제440호로 제정되어 일부개정을 포함하여 10회를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1998년 2월 법률 제5529호 종전마약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다가 2000년 1월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었다.

3) 개정이유

최초 「麻藥法」을 제정하게된 동기로는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고 그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의 사용 등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麻藥法」을 제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마약법시행령」으로 1958년 7월 보건사회부령 제26호로 제정하여 총20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역시 2000년 7월 폐지하였고, 1958년 5월 「대통령령」 제1365호로 「마약법시행령」을 운영하다가 21회의 개정을 거치며 2000년 7월 역시 폐지되었다.

특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은 1995년 12월 법률 제5011호에 의해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88유엔마약협약에 가입하면서 이에 부합하기 위해 외국의 몰수, 추징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적 공조절차를 만들었으며, 수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豫備的 법적 보완과 기존의 형벌에 벌금형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그 시행령을 1996년 4월 「대통령령」 제1496호로 제정하여 불법자금거래를 발견 신고할 의무와 그 범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로 규정하여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4) 主要判例

우리나라의 마약관련 최초의 判決로 1958년 2월 선고 4290형사 335판결에 의거 헤로인 밀매행위는 新刑法 시행 전에는 법령 제199호 違反罪를 적용할 것이나, 新형법 시행 후에 있어서는 同法 제19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과, 1960년 2월 마약법6조에 의해 사건번호 4292형상609호로 국민보건과 社會紀綱을 확립을 위해 영리목적으로 당국의 허가 없이 화전300평에 마약의 원료인 앵속 종자를 파종 앵속 15,700본을 재배한 자에 대하여 징역2개월을 선고한 판결로 당시 앵속을 一般人들이 常備藥처럼 여기며 재배하던 行態에 제동을 거는 마약관련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1960년 10월 선고 4293형상 585판결에 의거 아편을 수입한 소위에 대하여는 형법 17장 아편에 관한 죄의 규정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있으며, 1964년 10월 사건번호 64다291호로 당시 대법관 이었던 이영섭 裁判長에 의해 社會的으로 賞與金에 대한 논란을 규정한 麻藥法58조에 의해 상여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66년 2월 사건번호 65도1185호로 마약법2조에 의해 “키니헨”이란 약물과 1966년 12월 마약법4조와 6조의 “매사돈” 등을 마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마약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로 당시 마약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판례이며, 1983년 9월 사건번호 83도1927호 판결에 의하면 製藥會社에서의 아편수수행위를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등 제약회사에 제재를 가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판례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려는 재판부와 社會的 정서를 볼 수 있는 판례이다.

2. 大麻管理法

1) 대마관리법의 種類

「대마관리법」은 1974년 4월 제정되었다가 2000년 1월 폐지되었으며 총 7차에 걸쳐 개정을 하면서 時代的인 法律로 變化하여 왔다. 그 종류로는 「대마관리법」, 「대마관리법시행령」, 「대마관리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2) 제정연혁

「대마관리법」은 최초에 마약을 제외한 習慣性 있는 의약품과 대마의 관리를 위해 1970년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으나 1970년대 일부 연예인·청소년 등에서 대마초의 흡연이 社會的으로 심각한 問題가 되자 대마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분리하여 1976년 4월 법률 제2895로 제정 이을 단속하게 된 것이다.

3) 개정이유

大麻 濫用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해 대마의 재배와 흡연 등을 강력히 규제함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1976년 4월 법률 제2895호로 제정하여 7차의 개정을 거치다가 2000년 1월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었다.

이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細部的인 사안을 「대마관리법시행규칙」을 1976년 10월 보건사회부령 제536호로 제정하여 7차의 개정을 거치다가 2000년 7월 제160호로 폐지하였다. 주로 오·남용의 홍보와 계몽과 법상 미비점을 보

완하고 있으며, 1976년 6월 대통령령 제8159호로 「대마관리법시행령」을 제정하여 7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역시 2000년 7월 폐지되었다.

4) 주요판례

박정희 정권까지의 대마 관련 주요 판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우나, 대마관리법은 1976년 4월 법률 제2895호로 제정되었다.

1983년 12월 사건번호 83도2629,83감도 판결 「대마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판결로 대마 매매의 기수시기를 넓게 해석하고 있어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고 당시 大法官으로 있던 이일규 및 이회창 등의 대법관에 의해 判決되었던 사례가 있다.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種類

최초에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를 하다가 이를 폐지하고 1979년 12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는 주로 이 법에 의해 마약사범들이 단속된 중요 법률로 그 법률로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습관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등이 있다.

2) 제정연혁

1979년 12월 법률 제3216호로 제정하여 7차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 1월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習慣性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당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으로 규제를 하던 것을 당시 청소년과 약물중독자가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였다.

3) 개정이유

細部的인 사안들을 규제하기 위해 1980년 8월 「보건사회부령」 제645호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총15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 7월 제160호로 폐지하였다.

특별히 판매와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고 서류를 비치하며 보관, 저장 등에 대한 敎育을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1980년 6월 대통령령 제9900호로 施行令을 제정하여 총16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2000년 7월 폐지될 때까지 소비지단체 및 靑少年관련단체들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을 시, 군, 구청장들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 이들로 하여금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이다.

4) 주요판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1979년 12월 법률 제3216호로 제정되어 단속하여 오다가 관련 주요 판례로서 1982년 11월 사건번호 82도2055판결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7조 제1항에 대한 包括一罪의 범위와 몰수에 대하여

판례를 내고 있어 당시 마약사범에 대하여 그 財産적 이익까지 몰수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는 판례이다.

1982년 12월 사건번호 82도2380호의 판결에 의해 히로뽕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제조한 경우 取扱者로 보아 제조죄와 판매죄의 競合犯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내고 있으며, 1983년 7월 사건번호 83도1350호의 판결에 의하면 수출입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는 물론하고 위반되는 물품을 제조자와 소지자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處罰範圍를 넓게 해석하고 있는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는 판례인 것이다.

4. 기타

1990년 8월 법률 제4261호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독물및 극물에관한법률」을 대체하여 화학물질의 流行性を 심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 관리하게 되었고 이 법률로 인하여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본드, 부탄가스등의 판매 제공 및 섭취 吸入자를 처벌하게 되었던 것이며 처벌형법이외 治療再活 측면에서 「보호관찰법」 등이 있으나 治療再活 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第 2 節 麻藥 관련 國家機關의 變化

1. 保社部

현재 보건복지부 內에서 마약 등의 약물을 주로 다루는 부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다. 이 기관의 기원은 1945년 국립화학연구소에서 출발한다. 이를 기반으로 1954년 중앙생약시험장을 설립하고, 1959년에 '중앙보건원'을 설립하였다. 1963년 국립화학연구소와 중앙생약시험장을 통합하여 '국립보건원'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1977년 방사선 표준부를 개설하였으며, 1987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을 설립하였고, 1992년 생약부를 신설운영 하다가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6개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립하였다.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昇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마약을 주로 관장하는 부서는 마약관리과를 두어 마약류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하고 치료 및 보호를 지원하며 弘報와 자료개발 마약감시원의 임명 등의 역할을 하다. 특히 마약, 향정의약품의 제조·수입업 및 품목의 인·허가를 관장하며 허가 와 수출입의 조절 법령, 제도의 검토 및 원료물질의 관리는 물론 國際協力업무까지 관장하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신종마약과 향정신성약물들에 대한 관리를 함에 있어 식약청의 임무는 더욱 막중하다.⁴⁵⁾

45) 이상 보건복지부(2002), 홈페이지(<http://www.mohow.go.kr>), 보건복지부 조직편을 참조 할 것.

2. 檢察

한국은 1965년 이후부터 대마초가 월남파병 등의 여파로 전국에 전파되고 1970년대는 대마초가 주종을 이루다가, 1980년대 들어 중반까지 대만(염산에 페드린 제공)-한국(히로뽕 제조)-일본(마약소비국)으로 불리는 소위 ‘화이트트라이앵글’ 형성되었다. 1985년 중반이후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시기부터 미국 등지의 유학생과 演藝人들을 중심으로 마리화나가 공급되고 제조국이던 한국이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그 이듬해 1988년 노태우 정부는 대통령령(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7조)을 통해 2월 대검찰청 강력부 산하에 마약과를 신설하였다. 보사부소속 마약감시원 59명을 검찰로 전직시켜 13개 본청 및 3개 지청에 마약수사반을 신설하는 등 전문마약수사체제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1989년에는 ‘도핑 콘트롤 센터’등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1990년에는 전국 마약수사반 전산단말기를 설치하고, 1991년에는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사시약 등 첨단시약개발을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마약류사범 출소관리 전자시스템을 개발 의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0년 처음으로 ‘국가 마약퇴치전략’을 내놓고 마약과를 마약부로 승격시켜 마약퇴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⁴⁶⁾

46) 박해룡(2001),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75.

3. 關稅廳

공, 항만 등에서 마약류 등을 포함한 밀수범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관세지역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다. 주무부서는 조사국 특수조사과이다. 1952년 관세청 직제에 의해 세관업무를 실시하여 오다가 국제적 교류가 확대된 1980년대 이후에의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성을 띄게 되었다. 또한 국제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자체개발 기법 개발과 探知건의 활용으로 그 단속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仁川공항의 개항으로 그 重要性이 증대되고 있으며 關稅廳은 1990년 4월 마약류 전담부서인 ‘정보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1990년 보세구역내 수사권을 확보하고, 1993년 5월 그 기구를 확대 개편하여 39개의 세관과에 11개의 출장소에 마약전담반을 편성 약 280여명의 마약전담요원이 활동하고 있다.⁴⁷⁾ 특히 관세청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1987년 탐지견을 10두를 投入하여 마약단속에 기여하고 있다.⁴⁸⁾

4. 警察

정식으로 마약수사의 직제를 편성하기 이전에도 검찰과 보건국이 연계하여 마약사범들을 검거하여 왔다. 경찰의 경우 대부분 단순 투약자의 수준에서 나름대로 마약사범에 대한 관심과 그 重要性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88년 올

47) 조은석(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C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p. 293.

48) 관세청(2002), 「최근마약류 밀수 동향」, p. 163.

림픽을 계기로 檢, 警 합동 수사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며, 그 이후 본격적으로 마약수사를 위하여 1989년 주요 시 소재경찰서에 마약수사전담요원을 지정하였다.

1991년 경찰청 개청시 경찰청 형사국에 마약계를 신설하였으며, 1999년 전국 경찰관서에 마약류 수사전담요원 1,025명을 운영하였고 최근에 경찰청 마약지능과 산하의 마약계를 마약과로 승격조치하고 전국경찰서에 마약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과 더불어 마약사범들 중 전체의 약50%를 검거하고 있으나 人力과 裝備 및 經濟的 여건 등으로 大部分 단순 투약자 들을 검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⁴⁹⁾

5. 法務部

1) 식품의약품안전청

1945년 국립화학연구소로 설립되어 1996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청하고 마약류에 관한 일은 마약관리과에서 과거 마약류사범을 단속하였으나 1989년 마약 감시원이 검찰로 이체된 이후에는 사범경찰권은 부여되지 않고, 단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合法의료용 마약류관리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각종 社會團體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⁵⁰⁾

49) 박해룡(2001),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40.

50) 식품의약품안전청(2002),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식약청 연혁 및 조직편을 참고 할 것.

2) 保護觀察所

196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 의해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시도된 保護觀察 등에 관한 기관으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는 강제치료로 보호관찰과 치료보호, 治療監護 제도가 있다. 1987에 대통령령 제12232호로 공주에 치료감호소가 설립되었다. 治療保護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527명이 치료보호를 받았다.⁵¹⁾

1989년 7월 保護觀察所 開廳 당시 230명의 보호관찰직의 인원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의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치료 동기에 대한 평가도구가 標準化되지 않아 부적절한 치료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여 우리 체질에 맞는 표준화되고 實質的이며 사후관리까지 하는 단계적인 절차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직은 우리나라에서 교정단계에서 치료재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다.⁵²⁾

3) 國立科學研究所

국립과학연구소는 1904년 법무부 행형과의 지문계를 효시로 하여 1931년 8월 경기도 형사과에 지문계를 설치하였다. 1935년 경기도 형사부에서 사진 및 독극물 등을 검사하는 역할을 하여 오다가, 1946년 4월 이를 통합하여 실험을 위주로 한 法醫學실험실을 만들고, 1948년 11월에 감식업무까지 관장하게 되었다.

51) 조성남(2001), 「약물 남용자의 법적 처우에 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5.

52) 조성남(2002), 「21C 한국 마약 정책의 새 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마약범죄학과 세미나, 발표논문, p. 86.

1955년 3월 이화학적 실험을 국과수 감식계를 경찰국에 따로 분할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12월 대통령령 제9226호에 의거 직제를 개편하고 1986년 9월 현재의 양천구로 청사를 이전하여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검찰의 마약수사 성분의뢰 및 증거확보를 위해 각급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1985년 국과수에서 처음 메스암페타민을 가려 내었고 1993년에 최화경 박사의 노력으로 모발검사가 가능하게 되었다.⁵³⁾ 그러나 아직도 각 지방에 그 分所와 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약물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등 보다 專門人力 양성과 지원이 절실하다.

第 3 節 治療再活政策의 變化

1. 時代的 狀況과 治療再活 政策의 變化

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0년대 들어서 民間團體와 관련정부 부서에서 마약 관련 수요억제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설립인가를 득하고 설립되었다.⁵⁴⁾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약청,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검찰, 경찰 등과 連繫하여 代국민 홍보, 계몽, 예방활동 및 教育, 상담소설치 및 치료기관 斡旋, 設立,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등 수요를 감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53) 정희선(2000), 「생체시료에서 마약류의 검사」, 신일상사, p. 7.

국립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isi.go.kr>)를 참조 할 것.

5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설립 결과보고서.

2. 治療再活 法律의 變化(保護觀察法을 中心으로)

우리나라의 형벌제도가 應報主義, 위하주의⁵⁵⁾ 시대를 거치면서 人道主義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1884년 갑오경장 이후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고종황제는 잔인했던 참형제도를 없애고 범죄인 외 三族까지도 처벌했던 이른바 연좌제라는 것을 철폐했으며 체형에 사용하던 형구도 일정하게 하여 통제하는 등 인도적인 형벌집행을 시도했다.

또한 구금시설인 감옥도 단순한 구금을 위한 형태에서 범죄인을 교화 개선할 수 있는 시설로 개량해 나가면서 서구국가에서 발전한 人道的인 형사정책 사조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이 계속되면서 1905년(광무9년)에는 형법대전이 제정되고 형벌제도도 법제도적인 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⁵⁶⁾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甲午更張 이후 행형제도도 체계를 잡아 발전하게 되었는데 1911년에는 서울에 財團法人 사법보호회가 설립되면서 갇혀 보호활동이 전개되어 범죄자의 社會內處遇인 유사 보호관찰이 실시되었다. 그 후 형사제도의 繼續的인 발전으로 1912년에는 대한 누진처우제도와 함께 「가출소규칙」(총독부령 제33호)이 제정되고 1937년에는 가석방 「심사규정」(총독부령 제9호)이 마련되었다.

정부수립 후 1953년에는 刑法(법률 제293호)제정으로 형법상 刑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제도가 채택되었으나 본 제도의 趣旨상 병행되어야

55) 위하주의란 : 국가의 法적용을 강력한 처벌위주로 형벌제도를 시행하여 일반 국민들이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주의를 말한다.

56) 형사정책연구원(1999),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p. 79.

할 보호관찰제도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다.

보호관찰측면에서는 1943년 「조선사범보호사업령」, 「사범보호위원회령」, 「사범보호관찰규칙」 등이 제정되어 본래적 의미의 보호관찰에 근접한 갱생보호활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라 전국에 財團法人으로 17개의 사범보호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國庫補助와 자체사업수입으로 운영되었다.

1961년에는 革命政府에 의하여 구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사범보호에 관한 제 법령을 「갱생보호법」(법률 제730조)으로 개편하여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구 법령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다가 1963년 갱생보호법개정(법률 제1276호)으로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갱생보호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부를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곳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갱생보호제도가 국가제도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갱생보호법에 의한 활동은 출소자 등 형사처분자 가운데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 임의적 보호관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9년 비로소 保護觀察이 법제도로써 시행되었다.⁵⁷⁾

1) 保安處分

(1) 保安處分の意義

보안처분이란 범죄진압, 예방을 목표로 사회적으로 조직화된 강제적 처분으로서 형벌 이외의 것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년법상의 보호처분(1975부터 현재까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기

57) 형사정책연구원(1966),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pp. 79-84.

초한 윤락여성수용소에의 수용(1961-현재), 부랑아수용시설에의 수용처분(1975-현재), 사회안전법상의 보호감호처분(1975-1989),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1980-현재),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1980-현재), 국가비상시 국토건설단(1961), 삼청교육대(1980)등의 처분, 보호관찰(사회보호법상:1980-현재), 보안관찰법상(1989-현재), 보호관찰법상의 보호관찰(1988-현재) 등이 포함된다.⁵⁸⁾

(2) 保安處分の 연혁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보안처분은 주로 靑少年, 윤락여성, 浮浪人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중 소년에 대한 보안처분은 1958년 소년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다. 이는 사회內 처우와 少年院의 수용 등과 같은 시설내의 처우가 포함된 내용 이었다. 그 후로 淪落女性收容所가 1953년 ‘자매원’이란 이름으로 9개소의 수용소가 운영되었고 현재의 서울특별시립여자기술원이 1961년 6월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수용시설이다. 즉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어 공식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랑아시설은 1955년과 1956년에 43개소의 수용시설이 있었고 1963년에는 24개소의 부랑아수용시설과 16개의 부랑인 수용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는 1975년 內務部 訓令 410호에 의해 마련되었다.⁵⁹⁾

58) 법무부(2002), 홈페이지(<http://www.moj.go.kr>), 보안처분편을 참조 할 것.

59) 법무부(2002), 홈페이지(<http://www.moj.go.kr>), 우리나라 보안처분제도의 발전과 정편을 참조 할 것.

2) 保護觀察

(1) 보호관찰의 意義

범죄자를 구금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스러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自願奉仕者 등의 지원을 받아 지도·감독·원호하거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性行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첫째, 구금에 따른 범죄오염 및 가정, 학교, 직장과의 단절을 방지하고; 둘째, 교도소 증설억제 등 관리인원, 예산을 절감하며,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등 제도의 實效性을 제고하고; 셋째, 각 계층의 범죄자 처우 참여로 共同體 의식을 강화하며, 넷째, 사회內 자원을 활용한 專門的 體系的 지도로 效果的인 사회복귀를 도와 줄 수 있다.⁶⁰⁾

(2) 보호관찰의 연혁

보호관찰은 1841년 미국 보스톤의 한독지가가 알콜 중독자를 판결 전에 인수하여 개선 갱생시키는 것이 효시가 되어, 187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처음 입법되었다가 점차 발전 전파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인도, 필리핀 등이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2월 「保護觀察法」(법률 제4059호)을 제정하고, 1988년 7월 전국 보호관찰소를 開廳하여 少年犯을 중심으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그 후 1994년 4월부터는 성인 性폭력범에 대하여도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⁶¹⁾

60) 법무부(2002), 홈페이지(<http://www.moj.go.kr>), 보호관찰편을 참조 할 것.

61) 법무부(2002), 홈페이지(<http://www.moj.go.kr>), 보호관찰의 연혁편을 참조 할 것.

1995년 12월 보호관찰관련 조항이 신설된 개정형법이 공포되고 1996년 12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개정 성인법에 간한 보호관찰, 社會奉仕, 수감명령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1997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인법에 대하여 보호관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보호관찰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行刑제도상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행형제도는 1884년의 갑오경장을 분기로 하여 그 이전의 행형제도는 생명형, 태장형, 도형 및 유형제도를 내용으로 엄격한 형벌제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 형벌의 집행을 위한 일시적 구금의 방법으로써 소박한 구금제도도 있었으나 甲午更張 이후에는 서양문화의 도입과 그 영향으로 형성된 개화사상이 정치적 변혁과 더불어 행형제도의 획기적인 개편을 초래하였다. 즉 1894년 11월에는 감옥규칙이 제정되어 범죄자의 개과천선을 염두에 둔 일종의 계급처우법으로 볼 수 있는 '징역표'라는 것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에 행형의 權利권은 내부대신의 소관이었고,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경찰행정의 일부로서 직접 관장하여 집행하였으나 1908년부터는 법무대신이 장악하고 운영하였다.

이때부터 사실상 근대적 행형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으로 행정부 소속 하에 근대적 行刑시설을 설치하고 초보적인 구금의 분류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1911년에는 종래의 감옥규칙을 보완한 「조선감옥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인 발전을 보지 못하고 근대적 행형으로서의 명목만 남기고 말았다. 1912년에는 법원의 조직이 개편되어 고등법원과 복심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의 三級. 삼심제의 재판제도가 확립되었다. 1912년 10월에 경성감옥이 준공

된 이후에는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하여 곤란을 겪었고 1919년 3·1운동으로 격증한 피의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 공장, 학교, 敎會堂 등을 임시 감방으로 사용하였다.

1923년부터는 소년수형자에 한하여 階級制度를 실시해오다가 1938년 1월부터 본 제도의 장점을 따서 일급 성인범죄에 대해서도 행형누진처우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일대전기가 이룩되었다. 또한 1912년 총독부령 제33호로 가출옥 규칙이 제정되었고, 1937년 4월에는 總督府訓令 제9호로 가석방심사규정이 제정,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보호관찰제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갱생보호활동은 1943년 3월 「조선사범보호사업령」, 「동위원회령」, 「사범보호감찰규칙」 등이 제정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전국에 재단법인 17개의 사범보호회와 3개의 사범보호조성회, 5개의 사범보호위원회가 당시 설립되었으며 국고보조와 자체사업 수입에 의해 미온적으로 운영되었다. 1961년 9월 새로이 갱생보호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종래의 사범보호회, 사범보호위원회 등이 해산되고 그 재산과 사업을 계승한 公法人인 更生保護회가 각 도청소재지에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재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1963년 2월에는 갱생보호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종래 갱생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년원의 가퇴원 및 가퇴원자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를 법무부장관의 監督하에 공법인인 중앙갱생보호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에 8개의 지부와 교도소 소재지에 9개의 지소를 설치하였다, 특히 1953년 9월 우리 형법의 제정으로 형의 집행유예제도가 신설되

어 영. 미국식 선고유예가 입법화함으로써 형사입법사상 큰 발전을 이뤘다.⁶²⁾

이에 앞서 건국 후인 1950년 3월 법률 제105호로 「行刑法」이 제정 공포되었다. 1961년 12월 민주 행형제도에 합치시키기 위해 대폭 개정되었다가 1962. 년 12월 법률 제1222호로 다시 개정하여 歸休제도를 도입, 신설함으로써 민주 행형제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64년 7월 제39호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수형자의 분류심사방법을 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1969년 5월 법무부령 제111호로 교정누진처우 과정을 제정하여 분류심사와 행장심사를 一元化하였고,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32조 1항 7호에서 보호처분의 내용의 하나로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함으로 최초로 입법사상 보호관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세부규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그 후 1975년 7월 법률 제2769호로 「社會安全法」이 제정되어 사회 존립을 위한 보호관찰을 내용으로 한 것이다.

1980년 12월 법률 제3286호로 사회보호법은 당시 정치적 사회방위적 법률로서 그 의미가 있었다가 1981년 1월 법무부 훈령 제88호로 소년선도보호지침을 제정 전국으로 실시하면서 법무부에서 1983년 1월 보호관찰 시험실시지침을 마련하여 부산 지방검찰청관내에서 보호관찰을 試驗적으로 실시하다가 긍정적인 성과에 의해 다음해인 1984.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였고, 1988년 12월 마침내 「보호관찰법」이 제정되어 시행도 하지 않은 채 1989년 6월 일부조항을 개정하여 동년 9월부터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것이다.⁶³⁾

62) 형사정책연구원(1999),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p. 21.

63) 형사정책연구원(1966),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pp. 79-84.

3. 處遇改善의 變化(校正機關을 中心으로)

치료재활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제도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여부를 검사하거나 강제 수용하여 치료하는 제도로 治療保護制度가 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판결로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명하는 治療監護制度가 있다. 마약류 중독자중 재범방지와 갇생보호, 교정, 수사, 재판 등 社會 내 처우로 재범예방활동을 하는 보호관찰제도가 있고, 그밖에 교정 시설에서 기결 및 미결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중독을 치료하는 교정치료제도가 있는데 위 제도들에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 보호처분

사회방위 및 特別예방적 목적으로 少年犯이나 累犯者 또는 심신장애자, 약물중독, 가정폭력행위자 등에 대해 가하는 보안처분으로 현행법상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사회보호법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데 그중 심신장애자, 마약류 중독자 및 알콜 中毒者로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 등의 방법으로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표 4-1> 우리나라의 藥物남용자에 대한 강제치료제도

제도 내용	기관	심사 위원회	대상 요건	절차	판별 검사	치료 기관	퇴원 종료	기타
치료 보호	22개 전문병원	치료보호 심사위원 :7인 이내	마약중독자 판별	시도지사, 복지부장 관보고, 검사 -시도지사 통보	1개월	6개월	기간 종료시	
치료 감호	국립 감호병원	사회보호 위원회 :7인이내	금고이상의 형재범의위 험이 있는 마약중독자	정신과전 문의진단 검사 -감호청구		2년치료 위탁가능	심사 신청	2월:동태 보고, 6월:종료 심사
보호 관찰	보호 관찰소	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대상자, 수강명령	법원판결		3년		

자료 : 조성남(2001), 「약물남용의 法적 처리에 관한 연구」.

2) 치료보호

治療保護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제치료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인 치료보호기관으로 하여금 마약류사용자의 중독여부를 판별검사 하거나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도록 명하는 것이다.⁶⁴⁾

치료보호제도는 1967년 마약법 제50조와 1979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에서 중독자의 강제수용과 치료를 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89년 「마약법」 제50조, 「대마관리법」 제12조 3, 「향정신성의약품관리

64) 대통령령 제13045; 마약법 제50조; 대마관리법 제12조 3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1조 제1항.

법」 제31조 등에서 치료보호의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1990년 대통령령 제 13045호인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정」으로 제정되었다.⁶⁵⁾

현재 全國적으로 약 22개의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판별 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委員長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에는 이 제도로 인하여 527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 수가 감소하였다가 1998년 이후로 다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고 마약이나 대마사범은 극소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는 대부분 1개월 이내로 단기 치료를 하고 있으나 마약의 특성상 의학적 해독기간을 포함하여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정도로 치료를 함으로서 實質的인 治療效果를 얻는 방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표 4-2> 중독마약류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 약물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마약	1	3		1				5			3	
대마	2	1	1				2	10	1		9	23
향정	524	331	177	80	88		72	169	43	43	110	153
합계	527	335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176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약물상담 전문가 교제』, p. 47.

6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약물상담 전문가 교제』, p. 151.

3) 치료감호

사회보호법상의 보호처분의 하나로 치료감호소는 1987년 대통령령 제12232호로 공주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치료감호는 사회보호법 제2조의 보호처분 대상자가 심신장애자로서 형법상 責任無能力으로 벌할 수 없거나 그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減輕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의 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중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中毒된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8조 제1하)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고(12-20조) 그 기간은 치료감호의 내용, 방법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며 그 결정은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9조 2항)

이때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콜의 식음의 습벽 및 중독자는 분리 수용하여 치료한다(9조 사회보호법시행령 5조), 사회보호위원회는 치료감호의 집행개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親族에게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위탁할 수 있으며(28조), 치료감호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이 있어야 하고, 치료감호기간 동안 매 2개월마다 동태보고와 매 6개월마다 종료심사가 있고 종료 후에도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義務化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현재는 약 1년 정도만의 치료기간을 거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자의 치료와 재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부족하다.

66)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전게서, p. 153.

4) 보호관찰

보호관찰법은 1981년 미국에서 한 민간독지가가 법정에서 수많은 범죄인을 자진 인수하여 사회적응 지도함으로서 100%의 재범예방효과를 거둔 것을 효시로 보고 있다.⁶⁷⁾ 우리나라는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가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총칙의 보호관찰 규칙에 따라 성인범에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교정, 갱생보호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검찰단계에서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호), 재판단계에서는 일반법원의 형의 선고유예, 執行猶豫와 결부된 보호관찰형법 제62조의2), 소년법원 및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소년법 제32조;가정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제40조) 교정단계에서는 교도소의 가석방, 소년원의 가퇴원의 행정처분(행형법 제11장 가석방편 참조), 갱생보호단계에서는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임의적 보호관찰(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장 갱생보호 참조)등이 그것으로 약물사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인 것이다.

(1) 보호관찰의 조직

보호관찰행정 조직은 중앙감독기관인 법무부 보호국 산하에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검찰청 및 주요 지청 소재지마다 보호관찰소 및 지소를 설치하여 12개 보호관찰소와 11개 지소

67) 형사정책연구원(1999),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p. 186.

가 설치되어 있다.⁶⁸⁾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소년원생, 소년수형자의 가퇴원, 가석방과 그 취소,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가해자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 가석방중인 자의 부정기형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과 4-8명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역할

보호관찰소의 역할은 보호관찰의 실시 및 社會奉仕, 수강명령집행, 범죄예방활동 등 보호관찰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조직은 보호관찰소마다 약간씩 다르나, 서울보호관찰소의 경우 소장 밑에 사무과, 간호과, 조사과를 두고 있으며 관할 구역이 넓은 지역의 業務遂行을 위해 지소를 두고 있다.

68) 형사정책연구원,(1996),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 연구」, p. 13.

[그림 4-1] 보호관찰 기구표

법무부장관

보 호 국
관 찰 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5개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보호관찰소(12개소)
서울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설치)

지소(11개소)
서울 남부 의정부 강릉 홍성
안동 경주 진주 목포 순천 김천
(지청 소재지에 설치)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홈페이지(<http://www.drugfee.or.kr>),
보호관찰기관을 참조 할 것.

(3) 내용

가. 지도·상담

보호관찰은 단순히 감시적 동태관찰이 아니고 대상자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적 기법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와의 自願奉仕 등을 이용하여 매월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지도, 상담을 실시함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나. 원호·응급구호

대상자들에게 복학주선, 職業訓練, 경제원호 등 적절한 원호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재화에 필요한 응급구호를 실시한다.

다. 수강명령집행 및 각종교육

대상자를 상대로 특성에 맞는 각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들에 의해 준법교육, 價値觀 및 윤리, 도덕교육,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약물사범의 분류지도

보호관찰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대상자중 약물사범의 특성상 급수별로 구분하여(A중급 : 추적대상자, A급 : 중점관리대상자, B급 : 일반관리대상자) 대상자별로 집중지도, 감독관리하고 있다. 또한 약물사범의 특별관리의 경우에는 감시, 추적수사, 제재조치, 현황 등이 있다. 감시의 경우에는 약물사범은 24시간 감시, 감독하며 그 내용으로, 첫째, 생활상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둘째, 수시 전화확인을 하며, 셋째, 약물사범의 저소 대한 불시 점검 및 수시 약물검사를 한다.⁶⁹⁾

추적조사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강력한 해당 보호관찰소에

69)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62조.

서 대상자를 상대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제재조치의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 정기적 또는 필요시 약물검사 양성반응시 구인 또는 긴급 구인하여 집행유예 취소신청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게 된다.⁷⁰⁾

<표 4-3> 서울보호관찰소 형법상 약물사범에 대한 제재조치 (단위:명)

구분	계	구인	긴급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신청	집행유예 취소결정
97년도	4	1		1	1	1
98년도	47	8	5	13	13	8
99년도	45	8	6	14	14	3
계	96	17	11	28	28	12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홈페이지(<http://www.drngfree.or.kr>),

보호관찰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를 참조 할 것.

1980년대 이전은 제재조치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1990년 후반 서울보호관찰소의 통계를 보면 <표 4-3>과 같이 대상자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준수사항 이행을 감시, 감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황의 경우에는 최근 보호관찰 접수 및 교육프로그램 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접수하고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현황은 <표 4-4>와 같다.

70) 아큐사인(AccuSign)검사를 의미한다.

<표 4-4> 보호관찰 제도의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도\구분	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접수	현원	접수	접수
계	428,512	337,595	38,816	71,417	19,500
89	8,382	7,964	7,549	121	297
90	23,635	19,934	12,214	2,224	1,477
91	34,026	27,939	15,006	4,059	2,028
92	38,941	31,787	17,393	4,961	2,193
93	45,991	38,583	21,647	5,246	2,162
94	53,340	43,099	22,170	7,149	3,092
95	59,173	48,352	24,617	7,636	3,185
96	66,080	53,523	25,403	10,076	2,481
97	98,944	66,414	38,816	29,945	2,585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홈페이지(<http://www.drngfree.or.kr>),

보호관찰제도의 운용현황과 과제를 참조 할 것.

4. 治療機關의 變化(병원 및 치료시설을 중심으로)

치료보호, 치료감호, 교정시설에서 교화 및 기타 국공립 및 민간의료 기관에서의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형태에 관계없이 우선 概括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약물 남용 치료시설은 전담 시설로 보건복지부 산하 부곡정신병원 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가 있으며 이외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22개의 병원이 있다. 이 치료시설 등은 법적으로 문제된 약물 투약 사범들을 법률에 근거하여 强制的으로 치료 보호를 의뢰하는 곳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미비한 것으로 일반약물 남용환자들은 大學病院 精神科나 綜合病院 精神科, 개인 精神病院, 개인 정신과 의원의 입원 및 외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중 약물남용 환자들을 위한 독립병상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가진 병원은 극히 드

물다.

알코올 중독 환자에 대한 전문치료병동은 1986년 국립서울정신병원에 개설된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즉, 광주 성요한병원(1990년), 경남 양산정신병원(1991년), 전남 국립나주정신병원(1992년), 경기도 강주세브란스정신병원(1993년), 경기도 의왕시 계요정신병원(1996년), 경기도 오산시 오산정신병원(1995), 경기도 이천시 성안드레아정신병원(1996년), 경기도 용인시 용인정신병원(1996년) 등이며 이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국립서울정신병원과 계요정신병원 두 곳뿐이고 그 외에 최근 법무부 산하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대전 少年院의 의뢰를 받아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약물남용치료 전문 개인의원이 2개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청소년 약물 등도 大學病院이나 綜合病院 精神科나 소아정신과 개인정신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 다른 精神疾患자와 마찬가지로 一般的인 治療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의 <표 4-5>와 <표 4-6>는 각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관의 병상수와 마약류 사범 치료 관할 기관을 나타낸다.

<표 4-5>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병상 수(2001. 5. 28, 총504병상)

연번	관할기관	병원명	병상수
1	식약청	국립부곡정신병원	200
2	“	국립서울정신병원	5
3	“	국립나주정신병원	10
4	“	서울특별시시립은평병원	2
5	부산광역시	지방공사부산광역시의료원	20
6	“	부산시립정신질환자요양원	30
7	대구광역시	지방공사대구의료원	30
8	인천광역시	지방공사인천의료원	2
9	“	사회복지법인은혜병원	10
10	광주광역시	광주성은병원	5
11	대전광역시	한마음정신병원	70
12	울산광역시	큰빛병원	12
13	경기도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의료원	5
14	“	용인정신병원	10
15	“	계요병원	10
16	강원도	강원대학교병원	30
17	충청북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	10
18	충청남도	“ 홍성의료원	6
19	전라북도	“ 군산의료원	10
20	전라남도	“ 목포의료원	10
21	경상북도	“ 포항의료원	3
22	경상남도	“ 진주의료원	4
23	제주도	“ 제주의료원	10

<표 4-6>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관할기관 현황 (2001. 5. 28자)

연번	관할기관	담당부서
1	식양청	마약관리과
2	서울	의약과
3	부산	보건위생과
4	대구	보건과
5	인천	보건위생과
6	광주	“
7	대전	“
8	울산	“
9	경기도	보건위생정책과
10	강원도	보건위생과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16	경남	“
17	제주도	“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1). 홈페이지(<http://www.drngfree.or.kr>),
 전국보호관찰소 소개 및 법무부(2001), 홈페이지(<http://www.moj.go.kr>)
 보호관찰 통계자료를 참조 할 것.

第 5 章 國家麻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 1 節 麻藥관련 法律政策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보면 不合理한 법률이 아직 存在하고 있으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내 법률미비로 國際的 공조를 效率的으로 이행할 수 없었는데 국제적 주요 협약과 조약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9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 아편회의가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國際會議로 기록되고 있으며 이 모임은 ‘헤이그협약’으로 나타난다.⁷¹⁾ 이 회의는 후에 최초의 국제협약인 1912년 헤이그 협약을 시발로 마약류에 대한 감시, 관리가 국제협약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1차 세계대전 후 설립된 국제연맹은 산하에 아편 및 기타 위험약물거래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두고 1925년과 1931년 협약 및 1936년 협약을 체결하였다.

1946년 국제연맹을 계승한 국제연합은 의정서를 제정하고, 1948년 「아편 의정서」 등을 거치면서 국제관리를 보완하여 오다가,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하였고, 1972년 일부조항을 개정한 1972년 개정의정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 1988년에는 「마약 및 향정신 물질의 불법 방지에 관한 협약」(1990년 ‘스트라스 부르크’

71) 민생치안연구소(1994), 「국제화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대책」, 제7월호, p. 34.

협약)을 채택 운용하고 있다. 위 협약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은 그동안 마약에만 국한하던 국제관리를 환각제, 각성제, 수면제 등 향정신성물질에까지 확대하였으며 더욱이 과학용이나 의료용까지 오·남용을 방지 하고자 함에 의미가 있다.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는 1991년 3월 설립되어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위원회(CND)와 지역회의 등을 개최 주도하며 世界各國의 마약현황과 통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4년에 단일협약에 가입하였고,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은 1978년에 가입하였으며, 마약류 불법거래방지협약은 1998년 12월에 가입하여 세계의 마약퇴치를 위해 국제적 협력을 증대하고 있다.⁷²⁾

1980년대 초반까지 실지로는 UN에서도 마약 불법거래에 대하여 그다지 강조하고 있지 않다가 1984년 제39차 총회에서 제7회 국제연합방지회의에 의해 마약의 불법거래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계는 마약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협약과 조약을 만들고 이를 이행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률적 미비로 위 협약에 준한 통제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시행되고 세계적 협약 등과도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보안(특히 치료재활부분)하여 마약관련 法律을 재정비해야 한다.

72) 조은석(200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 206.

第 2 節 麻藥관련 國家機關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마약에 대한 공급차단 정책중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 세관 및 국가정보원들의 마약 담당수사관들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미국의 예처럼 마약을 관장하는 統一된 기구가 없고, 각 기관별 정보교류와 협력관계가 아직까지는 미약하여 廣域化되고 尖端化되는 마약사범을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청 등 각 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마약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有機的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각 기관의 장비 등의 현대화를 구축하여 첨단화 知能化되는 마약사범들에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대부분의 마약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지원 및 분실들을 확대하여 늘어나는 마약사범에 대한 검사기일의 단축과 정확한 약물분석 등으로 그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강력한 법적 뒷받침도 없는 상황에서 마약수사에서의 필요악과 같은 합정수사나, 도청, 監聽, 자금추적 등은 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정부의 새로운 국제적 공조와 마약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마약사범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인도조약을 1990년 9월 호주와 체결하였으며, 1995년 5월 법무부에서 마약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은 물론 이를 자본으로 증식한 재산까지 몰수하는 법안을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을 마련 입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도 마약관련 자금흐름을 포착하면 관계기관에 신고토록 하여 유엔마약협약 가입조건을 구비하여 국제적 공조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1998년 1988년 유엔마약협약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함으로 유엔 가입국 146개국에 대하여 개별 「범죄인도협정」이나 「사범공조조약」 없이 마약범죄자의 인도가 가능해지며 수사, 기소과정에서 범죄자의 소재 파악과 공동신문, 수사정보 제공의 사범공조가 이뤄지게 되었다. 재산에도 몰수 및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가능하며 동제배달기법도 국내에 적극 도입케 될 전망이다. 마약관련 國家機關들도 급변하는 世界的 흐름을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國際的 공조관련 기관들의 改善方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1. 搜查機關의 技法의 開發과 電算管理運營

마약류 사범들을 단속하기 위한 공급차단적 수사기법 이외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수사기법의 개발과 기존 사범들을 效率的으로 관리하고 치료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一元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신고에서 단속 치료까지의 과정을 통합관리하고 통계화하여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급 및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各 機關別 國際的 協力強化

국제적 마약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를 추적하여 조직적 범죄를 차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비밀보호에관

한법률」 등을 개정하여 수사기관이 마약거래자금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적 마약기구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에서 까지도 협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기구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하는 주요 국제 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마약위원회는 40개 위원국으로 구성 5년 임기제로 운영 국제협약의 준수감독 및 관장, 정책검토, 성안, 추가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둘째, 유엔마약과는 유엔기구내 학술적 기술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유엔사무총장을 보좌 마약류관련 행정업무수행하며; 셋째, 유엔 약물남용통제기금은 마약관련 국제정책에 필요한 재정지원기구로 자발적인 위원국의 기여에 운영하고; 넷째, 국제마약관리국은 : 마약류 사용을 의료용 및 과학용으로 제한하기 위해 마약류의 재배, 생산, 제조 및 거래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다섯째,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1977년과 1988년에 중기계획에서 마약류 남용문제를 채택하여 지역회의나 각종 연구회의 개최 정보 교환 등을 행하는 기구이고; 여섯째, 세계보건기구는 단일협약 및 향정신성물질협약의 통제대상 물의 추가 삭제 등에 관한 醫藥的 조언 및 약물남용통제기금과 협력하고 있다.

일곱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14년 모나코에서 7개국이 시작하여 우리나라는 1965년 5월 한국 중앙사무국의 업무를 파리 리용 등에서 직원 5명이 수행하고 있으며 마약범죄일반에 대하여 국제협력 및 국정통제역할 수행하며 147개국이 가입 국제수배제도 등으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처와 협력을 수행하며; 여덟째, 관세협력이사회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밀수에

관하여 관세의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다.⁷³⁾

특히 서방선진 7개국(G7)정상회담에서 마약류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여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고 아울러 마약류특별총회는 1990년 2월 UN본부에서 개최 유엔마약퇴치 10개년으로 정함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도 국제적 공조와 기구를 이용한 마약퇴치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⁷⁴⁾

第 3 節 治療 再活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현재 우리나라의 통제정책에 의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오히려 마약류 사용의 증가와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마약통제 정책에 대하여 제고하여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급을 차단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입안하고 모든 관계 부서가 공급을 차단하는데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수요를 억제하는 문제는 누구를 상대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종결을 지을지가 막연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대안들이 거액의 비용투자를 필요로 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책들이 대부분으로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보이는 공급차단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의 변화는 바로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급의 변화는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⁷⁵⁾

73) 이상 전경수(1994), 『마약범죄수사론』, 도서출판, p. 307에서 요약.

74) 민생치안연구소(1994), 「국제화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대책」, 7-8월호 (제15호).

75) 강민수(2001), 「마약범죄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p. 13.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全般的인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제시하기는 너무나 광범하다. 우선 법 테두리 안에서 교화 및 정책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사회복지사업의 사전에 따르면 사회복지란 “좁은 의미로 사회 사업을 말하기는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精神的, 道德的, 身體的, 經濟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사업과 사회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교육, 주택, 공중보건, 정신위생, 범죄 및 비행문제에 대한 대책과 같은 사회정책이라고 하여 범죄와 비행대책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⁷⁶⁾ 보호관찰이 이러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범죄와 비행대책 중 사회 내에서의 중심적인 국가제도라고 본다면 보호관찰은 社會福祉적 업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 보호법의 치료감호 제도가 법관의 재판에 의해 선고받고 확정된 자만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형을 선고받은 자들 중 현재까지도 중요하지 않은 중독자에 대하여는 치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도소에서 단순히 감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도소 등에서도 형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진들의 전문성 결여, 時間的 장소적 제한성이 여전히 문제시되고 있어, 보다 積極的인 관심과 지원으로 인해 재소자들의 자율적인 환경에서 중독자들이 자신에 처한 상황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선택하고 사후까지도 관리 받은 시스템이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방과 치료기관 차원에서 改善하여야 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6) 형사정책연구원(1999), 전거서, p. 298.

1. 啓蒙과 弘報

최근 각종 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마약류 관련 캠페인과 TV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마약의 위해와 위험성에 대하여 홍보하고 중독자들을 재활치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정부차원의 계몽활동과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治療保護機關의 擴充 및 專門人力の 양성

1997년 9월에 완공된 국립부곡정신병원이외 마땅히 약물중독자를 수용하여 치료 재활을 도와줄 의료기관과 專門機關이 부족한 현실이고 현재 일부 정신병원과 치료센터 등에서 국소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의 형태로는 양질의 서비스와 늘어나는 약물중독자들을 效果的으로 수용 치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치료기관에서도 선진국형 시스템을 갖춘 전문가들의 부족으로 일부 의사와 상담부분에서 만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가 육성과 중독들에 대한 치료 標準化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⁷⁷⁾

77) 조성남(2001), 「약물남용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p. 68.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민수. 『마약류범죄의 남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1).
- 국가안전기획부. 「국제마약류 실태와 통제」. (1993).
- 「21C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제와 대응」. (1998).
- 「국제마약류 실태와 통제」. (1999).
- 국가정보원. 「마약류 생산실태」. (2001).
- 관세청. 「최근마약류 밀수 동향」. (2002).
- 대검찰청. 「마약백서」. (1983).
- 「마약류 범죄백서」. (1998).
- 민생치안연구소. 「국제화에 따른 마약류 범죄의 현황과 대책」. (1994).
- 박해룡. 『마약사범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1)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84).
-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실. 「범죄백서:1971-2002까지」
- 「경찰연보:1947-1972까지」
- 「마약백서:1974-2002까지」
- 서울지방경찰청. 「마약류수사연구」. (1999).
- 임대환. 『마약밀수 실태와 조사제도 및 기법』, 협동문구. (2001).
- 전경수. 『마약범죄수사론』. (1992).
- 정희선. 『생체시료에서 마약류의 검사』, 신일상사. (2000).

조갑제. 『코리언커넥션』, 월간조선. (1983).

—— 『코리언커랙션』, 조선일보사. (1989).

조성권. 『21세기 국가 反마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2002).

조성남. 『약물 남용자의 법적 처우에 대한 연구』. 배재대 석사논문. (200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설립결과보고서」. (2000).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 (1998).

—— 「약물상담 전문가 교재」. (2001).

형사정책연구원.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1966).

——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1992).

——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
(1999).

형사정책연구원. 「마약류확산실태와 21C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2001)

——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 연구」. (1996).

한성대학교. 「21C 한국 마약 정책의 새 방향」. 국제마약범죄학과. (2002).

2. 신문 및 잡지

동아일보. 인터넷검색(1945-1979).

조갑제. 「쫓는자와 쫓기는자」. 월간조선, 1월호. (1984).

—— 「히로뽕 지하제국 탐험 제3부」. 월간조선, 2월호. (1984).

월간조선(1990), 「히로뽕 전쟁」, 3월호.

—— (1992), 월드커넥션, 5월호.

월간중앙(1989), 「마약전선 안전지대는 없다」, 5월호.

—— (1989), 「마약전쟁 안전지대는 없다」, 5월호.

중앙일보. 인터넷검색(1991-1999).

3. 인터넷자료

검찰청 홈페이지(<http://www.sppo.go.kr>)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nisi.go.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go.kr>)

대검찰청 마약수사부 홈페이지(<http://www.sppo.go.kr>)

마약범죄시민사이버감시단 홈페이지(<http://www.Drugcci.or.kr/>)

미국국립보건원산하국립약물남용연구소 홈페이지(<http://www.grugabuse.gov>)

미국 국립알코올 및 약물정보실 홈페이지 (<http://www.health.org.govpubs>)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ow.go.kr>)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약물남용청소년을위한강남지역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drugkiler.or.kr>)

유엔 약물통제계획 홈페이지 (<http://www.undcp.org>)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drugfee.or.kr>)

한국약물상담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yakmul119.com>)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c.re.kr>)

<부 록>

1. 국내 마약관련 수사상담 기관

대검찰청 및 지검, 지청 마약부.

경찰청 마약계 및 지방청 마약계, 각 경찰서 마약반 각 파출소
각 관세청 산하 마약계.

2. 국내 마약관련 전국병원 및 상담시설

한국대학병원신경정신과 : 020760-2454/의학박사 하규섭.

국립정신병원정신신위생과 : 02-204-0105/의학박사 오동열.

성북중앙병원 : 02-919-3404/의학박사 김광천.

제일안과의원/원장 김동진

미8군121병원 마약치료센터 : 02-7917-5208/김선민.

인하대학병원안과/문연성

서울대학교의과대학신경정신과 : 02-760-2450/의학박사 조두영

미국, 하와이 의과대/의학박사 김승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 02-911-0355/약학박사 육창수.

신재경산부인과/원장 신재경.

단국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의학박사 김건열.

나우리정신건강센터 : 02-3444-8700/부원장 윤명숙.

충주신경정신과의원/원장 반영진.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 02-0248-5531/소장 김보애.

이순강외과병원/원장 이순강.

국립서울정신병원 : 02-204-0301/청소년과장 진혜경.

성북중앙병원/원장 김광천.

문경서 신경정신과의원/원장 문경서.

서울대학교의과대학신경정신과 : 02-760-3155/교수 조맹제, 권준수

전북대학교/교수 윤명숙.

김경빈신경정신과의원.

국립부곡정신병원.

국립나주정신병원.

부산의료원.

부산대남병원.

대구의료원.

인천병원.

삼영신경정신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대전신생정신병원.

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춘천의료원.

청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전주의료원.

마산성모병원.

제주의료원.

청소년대화의광장 등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실 참조.)

3. 국내 마약관련 감정시설

국립과할수사연구소 : 02-600-2320/약학박사 정희선.

한국과학기술원 도핑컨트롤센터 : 02-958-5061/약학박사 최명자

한국시품의약청안전청 : 02-382-0184/이학박사 박종세.

4. 국내 마약관련 각 단체

서울YMCA및 각 지회.

한국마약범죄학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약물상담가협회.

한국약물남용연구소.

청소년약물전화상담소 ; 02-337-7582-3.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상담센터 : 080-022-5115.

계요병원청소년정신의료센터.

수서사회복지관 등(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실 참조).

ABSTRACT

A Study on Drug Crime and Drug Policies in Korea : 1945-1975

- A focus on the Park Regime -

Lee, Sung-Ja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Drug Crime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drug crimes as well as drug policies in modern Korea, in particular, concentrating on the Park regime(1961-1979). In exploring both the patterns of drug trafficking and the changes of the legal perspective related in national anti-drug policies, this paper offers some constructive policy alternative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drug abuse and drug related crime. In this point this paper first of all criticizes the existing problems of traditional drug policies which is so much stressing strong penalty to drug-related crime.

Firstly, in order to decrease both drug addicts and criminals this paper suggests to need amend some codes of current 『2000 Narcotics Law』

which is still insufficient in the level of both drug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econdly, it is indispensable to reform inner system of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police, the prosecution, the custom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tc., to make better deploy the anti-drug policies. In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this paper addresses ① that such agencies should involve more actively in anti-drug campaign; ② they should develop investigative techniques, while can operate an integrated computer network sharing drug-related information; ③ they also ne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co-exchanging drug information with other countries. Finally, this paper stresses which should establish realistic programs through the fundamental reform in policies of drug treatment & rehabilitation.